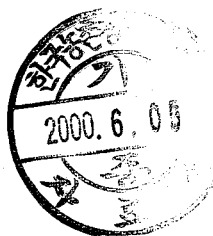


海外農業資料 2

食糧의 武器化는 可能的가

美國의 食糧資源과 外交政策

李 仁 哲 編譯



韓國農村經濟研究院

RP 223/

解 題

美国의 카터大統領은 지난 1月 4日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에 대한 報復措置의 하나로 蘇聯에 대한 穀物輸出을 中止한다고 발표하였다. 美国이 이번에 輸出을 中止한 穀物은 美·蘇穀物協定の 定期協議에서 1979年 10月부터 80年 9月까지의 1年동안에 販売기로 한 2,500万 t 中 美国政府의 事前承認이 필요한 1,700万 t 이다. 美国의 이번 措置가 昨年에 5,000万 t의 穀物이 減産된 것으로 추정되는 蘇聯에 대하여 어느정도 壓力으로 작용할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蘇聯이 輸入기로 하였던 穀物이 옥수수, 大豆 등 飼料穀物이 대부분이고 또 브라질 등 일부 主要穀物輸出国과 第3国을 통한 穀物輸入의 길이 막혀있지 않다는 점에서 美国의 對蘇穀物 輸出中止가 얼마나 實效를 거둘 수 있는지는 速斷을 내리기가 어렵다.

원래 穀物은 石油와 달리 다른 供給源이나 代替穀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반면 變質되기 쉬워 오랫동안 保管하기 어렵고 또 그 生産이 氣象條件에 크게 左右되는 資源이기 때문에 그 穀物을 外交目的을 위한 手段, 다시 말하면 武器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定說이 되고 있다. 최근 빈번히 油價를 올리는 石油輸出国 會議에 대항하여 美国이 穀物을 武器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그와같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国이 蘇聯에 대하여 穀物을 武器로 사용한 이상 그 成敗는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이 措置가 美国의 農業, 世界穀物市場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美国의 農産物을 輸入하는 나라에게 미치는 影響이다. 美国은 禁輸措置로 販路가 막힌 剩餘穀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는 代替燃料인 가스홀製造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友邦 中·先進国에게 追加輸出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美国農産物 輸入이 한계에 도달한 日本은 또다시 美国剩餘穀物을 購入하여 美国에 備蓄해 달라는 美国의 요청을 받고 있다는 報道가 있다. 아문든 1979年 端境期の 世界穀物在庫가 2億 t이 넘는

상태에서는 美国의 剩餘穀物을 현재의 규모 이상으로 輸入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西方先進國들이 第3世界의 食糧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剩餘穀物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備蓄한다는 構想도 당장은 실현성이 적다. 그래서 美国이 만일 對蘇關係가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剩餘穀物의 만족할 만한 輸入先을 찾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措置는 植付制限 (셋트 어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美国이 植付制限을 斷行하게 되면 剩餘穀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對蘇穀物 禁輸의 效果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美国은 史上最高의 豐作을 기록한 1978年에도 穀物의 過剩生産을 막기 위해 植付制限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植付制限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만일 세계적인 규모의 氣象異變이 겹치게 될 경우 食糧危機는 蘇聯이나 食糧이 늘 부족한 일부 低開發國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될 염려도 없지 않다.

이와같이 食糧의 武器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의 해명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本院은 「食糧의 武器化는 可能한가 — 美国의 食糧資源과 外交政策(Use of U.S. Food Resources for Diplomatic Purposes — An Examination of the Issues, 1977)을 번역 간행키로 하였다.

원래 이 資料는 1977年 美国議會 圖書館의 調査팀이 下院 國際關係委員會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穀物禁輸措置가 世界의 食糧需給事情에 미치는 문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느낌이 없지 않지만 美国이 1940年代末 이후 취해 온 일련의 穀物禁輸措置의 경위와 성과, 禁輸措置에 따르는 國內外問題를 다루고 있어 최근의 對蘇穀物 禁輸措置의 背景과 美国의 農産物輸出政策을 理解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믿는다.

食糧의 武器化는 가능한가

美國의 食糧資源과 外交政策

T. 갈 디
J. 베이커
L. 메이어

要 約

- I. 貿易制限에 관한 美國의 經驗
- II. 美國의 通商政策과 農産物輸出拡大의 相互關係
- III. 食糧을 外交目的에 사용할 때의 國內 政治問題
- IV. 食糧輸出操作에 대하여 고려되는 諸政策

輸出管理法 해설

附 表

要 約

本 研究에서는 食糧파위의 概念과 美國이 그 파위를 使用할 可能性에 관한 여러가지 問題가 검토된다. 食糧파위란 食糧輸出국이 어떤 특정 市場이나 그 市場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食糧援助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다른 여러나라의 意思決定이나 활동에 대하여 발휘할 수 있는 外交의 影響力을 말한다.

食糧파위를 행사하는 형태는 商業的農産物貿易條件을 교섭하는 外交上의 立場, 長期供給協定の 체결, 특정 國家나 地域에 대한 일방적인 輸出制限이나 禁止, 개별 國家에 대한 各種 形態의 食糧援助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를 생각할 수 있다.

食糧파위는 市場支配力이나 또는 特定諸國의 食糧援助의 의존에 근거를 둘 수도 있다. 어떤 食糧輸出국이 어떤 특정 產品이나 國家에 대한 市場

支配力에 바탕을 두고 食糧과위를 가지려면 (1) 輸入國은 상당량의 當該產品을 필요로 하며, (2) 그 필요한 產品의 수량이 輸入國의 總消費量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상당히 높아야 하고, (3) 다른 供給源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거나 당장 開發 될 수 없어야 하고, (4) 만족할 만한 代替產品을 다른 데서 쉽게 입수 할 수 없거나 開發 할 수 없어야 한다는 네가지 條件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食糧援助에 바탕을 둔 食糧과위를 가지려면 (1) 특수한 條件하에서 移轉 할 수 있는 剩餘食糧이 있어야 하고, (2) 다른 잠재적인 供給國이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특수 條件下에서 食糧援助를 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야 하며, (3) 輸入國의 財政力이나 外貨保有高가 지극히 부족하여 그 나라의 經濟計劃이나 國防計劃을 크게 희생하지 않고는 그 나라의 國內食糧必要量を 충족시킬 수 없다는 條件만 있으면 된다. 이와같은 類型의 食糧과위가 존재할 수 있는 前提條件은 世界市場條件과는 상대적으로 관계가 없다.

本 研究는 世界市場에 있어서의 최근 美國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최근 美國의 小麥, 飼料穀物, 大豆는 世界食糧市場에서 뛰어난 위치를 차지한 결과 최근 몇해동안에는 특정 諸國에 대하여 市場支配力에 바탕을 둔 食糧과위를 발휘할 수 있는 機會를 장악하고 있다. 이와같은 機會는 앞으로 10年동안 빈번히 찾아 올 가능성이 있다.

2. 美國이 市場支配力에 바탕을 둔 食糧과위를 발휘할 機會를 갖게된 것은 小麥, 飼料穀物市場에 일시적인 稀少狀態를 초래한 세계적인 氣候패턴의 결과이며 美國政府의 政策이나 또는 立法措置의 결과로 생긴 경우는 지극히 적었다.

3. 1972~74年의 供給不足狀態와는 대조적으로 1920年 이후의 대체적인 世界農產物市場의 특징은 過剩인데 이 過剩現象은 生産國에 貿易保護政策을 채용케 하고, 덤핑이나 過剩產品의 倉庫保管을 촉진시키고 일부 國家들에게는 대규모의 海外食糧援助計劃을 채용케 하였다.

4. 美國이 지금까지 행한 農產物輸出制限은 거의 예외없이 食糧과위行使의 효과적인 메카니즘이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효과적인 市場支配의 條件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 된 경우도 있고, 특정 政策의 변경이나 또는

措置를 끌어내는데 目標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美國의 불만을 표명하거나 또는 美國의 供給에 대한 타당한 價格을 방위하는데 原因이 있었던 경우도 있다.

5. 美國의 農産物輸出制限은 基幹的인 國內經濟部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면 農産物價格이 억제되고 農業所得이 줄어들어 農業部門은 불리한 영향을 받았고, 또 實業界는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要素가 추가되어 매우 큰 不確實性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美國農産物輸出制限에 대한 國內 農業團體의 반응은 한결 같이 否定的이었다.

6. 美國이 앞으로 市場을 支配하기 위하여 食糧과위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農産物의 入手可能性, 價格形成 및 處分에 대한 政府의 지배력을 늘리기 위하여 美國의 對外農産物貿易에 관한 現行 施行메카니즘을 대폭적으로 改편성할 필요가 있다. 食糧과위를 꾸준히 行使하기 쉽게 하도록 農産物貿易에 있어서의 聯邦政府의 역할을 조정하려고 하면 그와같은 조정에 따라 國內의 經濟나 政治에 分렬이 생기기 때문에 國內에서 一大論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7. 美國의 食糧援助計劃은 第二次大戰 이후 한 형태의 食糧과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적, 정치적, 인도적인 이유로 행하여진 이計劃은 수백만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食糧을 提供하기는 하였지만 國內과 農産物輸出市場에서 競爭相對國間에 심지어, 被援助國間에도 論爭을 일으켰다. 美國의 전반적인 對外政策 가운데서 食糧援助의 엄격한 역할은 한동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8. 市場支配力이나 또는 食糧援助에 기초를 둔 食糧과위가 존재할 수 있는 前提條件이 갖추어진 경우 그러한 과위를 행사하여 美國이 이용할 수 있는 外交目的達成手段의 규모나 類型은 対象國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여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要素가 食糧과위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효과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9. 지난 20年동안에 美國의 農産物輸出은 늘어나 美國의 對外農産物貿易政策에는 農産物의 自由貿易과 貿易장애의 제거를 重視하는 경향이 있었다. 美國이 그 食糧과위를 外交上의 武器로 일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앞서 말한 경향에 거슬리는 것이 되고 아마도 非農産物의 貿易분

야에서 報復措置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本 研究에서 제기된 문제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美国政府가 포괄적이고 일관된 食糧과 政策의 실시를 준비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로 그 政策을 실시 하여야 하는가.

2. 農産物貿易에 대한 政府管理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그 範圍와 性格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3. 現行 輸出規制立法은 그러한 政策이 요구할지도 모르는 美国의 포괄적인 農産物輸出規制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수단인가.

4. 美国의 農民团体 대표들의 견해에 비추어 美国이 보다 광범위하게 食糧과 貿易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을때,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I. 貿易制限에 관한 美国의 經驗

農産物貿易을 규제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政府의 선택범위는 그것이 순전히 經濟의理由에서이든 또는 經濟, 對外政策上的理由에서이든 상당히 넓다. 그와같은 政策은 農産物貿易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한 規制나 制限으로부터 완전한 通商禁止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다.

이 章에서는 經濟政策이나 또는 外交政策의 수단으로 채택 할 수 있는 그와같은 政策가운데서 通商禁止와 선택적인 一時停止에 대한 美国의 經驗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전면적인 通商禁止

가. 中 共

1935년부터 45년까지 美国의 對中非軍事物資의 年間 總輸出額은 1億 달러 미만이었다. 그중에서도 農産物이 주요한 輸出產品이었으며, 煙草는 美国이 유일한 供給國이었고, 綿花, 小麦 및 小麦粉은 第二位의 供給國이었다. 1945~49년에 美国의 輸出額은 年間 평균 3億6千万달러로 늘어났다. 대규모 商品援助輸出이 그 유일한 이유였다. 1949년에 中共이 大陸을 장악하여 建國함에 따라 美国의 輸出額은 1949년에 8,300万달러,

1950년에는 4,5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두 해에 美国이 中共에 輸出한 주요 產品은 綿花였으며 그 輸出額은 1949년에 2,900만달러, 1950년에는 2,800만달러였다.

中共이 1949年 政權을 수립한 후 美国은 輸出許可制를 통하여 中共과의 戰略貿易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中共軍이 1950年 12月 韓國動亂에 개입하였을 때 美国政府는 몇가지 規則을 발표하여 美国内の 中国人 資産을 효과적으로 凍結하고 兩國間의 모든 輸出入을 중지하였다. 유엔總會도 1951年 5月에 中共에 대한 武器関連物資의 전면적인 禁輸를 권고하였다. 共產圈이외의 대부분의 工業國들은 韓國動亂이 끝날 때까지 유엔의 禁輸勸告에 同調하였다. 그러나 日本과 西欧諸國들은 1956년까지 西欧諸國의 戰略上의 輸出制限 리스트에 오른 物品을 제외하고 中共과의 貿易을 再開하기 시작하였다. 美国은 1969年 7月 까지 그 禁輸措置를 계속해 오다가 그해 7月 닉슨政權이 在外居住 美国人에게 한정된 수량의 中共產品의 購入을 허가해줌으로써 中共과의 접촉을 부활시키기 위한 최초의 措置를 강구하였다. 그리고 1970, 71, 72년에는 貿易關係의 正常化가 촉진되었다.

1) 對中禁輸措置의 충격

中共의 經濟關係에 있어서 外國貿易이 주요한 要素가 된 적은 없다. 美国이 禁輸措置를 취한 1950년에 中共의 外國貿易總額은 불과 12億1,000만달러(GNP의 2.5%미만)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當時까지 美国의 輸出은 4,5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中共은 權力을 강화하자 마자 貿易關係를 새로운 方向으로, 다시 말하면 蘇聯과 東歐諸國에 크게 의존하는 方向으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1950年代에 蘇聯은 中共의 주요한 貿易상대국이 되어 機械, 工業製品, 工業設備 등을 中共에 輸出하였다. 1959년까지 蘇聯은 中共貿易의 45%를 차지하고, 다른 共產圈諸國이 20%를 차지하였다.

1960년에 蘇聯이 技術援助와 裝備를 갑자기 철수함에 따라 中共의 貿易政策은 다시 180度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中共은 蘇聯의 工業製品이나 輸送機械의 部品, 交換部品을 계속 輸入하는 한편 西方側으로부터 工業製品 등을 輸入하기 시작하였다. 中共이 蘇聯에서 들어 온 輸入額은 1960년에 年間 8億달러의 水準이었으나, 1965년에는 2億달러 強으로 줄

어든 반면, 非共產圈諸國으로부터의 商品購入額은 1960년에 6億2,500萬 달러였던 것이 1965년에는 27億달러로 늘어났다. 中共은 또 1961年 부터 해마다 규칙적으로 穀物을 輸入하기 시작하여 1969, 71年을 제외한 1961~75年 사이에 中共이 輸入한 穀物數量은 해마다 400萬 t 을 下廻하지 않았다. 1972, 73年の 輸入量은 각각 700萬 t 을 넘었다.

2) 中共에 대한 禁輸措置의 효과

美國의 禁輸措置가 中共에 중요한 經濟效果를 주었는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禁輸 초기의 中共貿易量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고, 美國이 禁輸措置 이전에 輸出한 品目, 예컨대 煙草, 原綿 등은 모두 中共에게 중요한 品目도 아니었고, 또 他國에서 輸入할 수도 있는 것들이었다. 美國의 禁輸措置는 中共에게 한정된 영향밖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中共의 工業化나 經濟發展에 阻害要因으로 작용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西歐工業國이 中共에 輸出을 시작한 1955~56年 이후부터는 西歐의 非戰略的 技術이 단절될 가능성은 제거되었다. 1960年 이후에 신중히 행하여진 輸入先의 分散化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 하나는 非共產圈工業國과 이미 어느 정도의 貿易關係가 확립되어 있었고, 둘째는 쿠바에 대한 美國의 경우처럼 蘇聯이 予備部品이나 設備供給을 모두 중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1年 이후 戰略物資나 대량의 穀物輸入을 제외하고 中共은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設備나 產品을 대체로 購入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中共에게 穀物이 매우 필요하였던 1960年代 초기에는 캐나다와 濠州가 穀物을 간단히 공급해준 관계로 中共은 그 두 나라에서 해마다 數百萬 t 의 穀物을 輸入할 수가 있었다. 그 당시는 세계적으로 대량의 穀物이 남아돌아 市場價格이 下落 추세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穀物去來는 美國보다도 그 競爭國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나. 쿠바에 대한 美國의 禁輸

禁輸 이전의 쿠바 經濟는 中共과는 달리 外國貿易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1956~66年の 쿠바의 輸入은 GNP의 22%에서 32%에 달하였다. 쿠바에 投資를 많이 하였고 또 地理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美國은 쿠바의 주요한 貿易相對國으로서 쿠바의 輸出의 약 50%를 받아들였고 쿠바가 輸入하는 60~70%를 공급하였다. 第二次世界大戰 이후 쿠바는 美國이 輸入하는 사탕의 30~40%를 공급하였는데 카스트로가 革命을 일으키

기 1년전인 1958년에는 사탕이 쿠바의 輸出收入의 78%를 차지하였다. 이해에 美国이 쿠바에 輸出한 產品의 金額은 5億300萬달러로 그 内容도 지극히 다양하였다. 그 가운데서 단일 최대 品目類는 機械類, 車輛으로 그 總額은 1億6,300萬달러였고, 그 다음은 1億3,700萬달러의 動植物性 食品, 7,200萬달러의 織物, 木材, 紙類의 순이었다.

1959年 1月 카스트로가 革命을 일으킨 이후, 1959年 후반부터 1960年에 걸쳐 일련의 反美 對策을 취한 결과 1961年 1月에는 美国과 쿠바間 係는 전면적으로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케네디大統領은 1962年 2月 3日에 1961年 海外援助法에 의거하여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通商 禁止를 宣言하였다.

1) 쿠바에 대한 禁輸措置의 충격

美国이 禁輸措置를 선언할 때까지 쿠바經濟는 이미 西方諸國에 대한 貿易依存으로부터 共產圈 依存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58년에 16億 달러였던 總 貿易額中 共產圈과의 貿易은 불과 2,000萬달러였던 것이 1961~73년에는 1年間을 제외하고 쿠바의 總貿易가운데 적어도 2/3는 對 共產圈貿易이 차지하였다.

美国의 禁輸措置는 최초의 3, 4年동안에는 非共產工業國과 南美諸國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쿠바 經濟에 최대의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1966年이후부터 西欧와 日本의 資本財와 設備 메이커들은 美国의 禁輸措置를 무시하기 시작하여 1970년까지 美国의 措置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 西欧諸國과 日本은 쿠바에 資本財를 판매하고 카나다는 穀物을 供給하였다. 또 共產圈諸國은 쿠바產사탕 輸出의 절반이상을 世界市場 價格보다 비싼값으로 구입하고, 日本과 다른 나라들은 나머지 1/4을 각각 구입하였다.

2) 쿠바에 대한 禁輸措置의 효과

禁輸措置가 쿠바 政府의 政策을 전환시킬 만큼 큰 效果는 없었지만 美国의 몇 몇 政治目的에는 도움이 되었다. 첫째로 美国의 禁輸措置와 1964年 7月에 채택된 美州機構의 결의는 쿠바의 행동에 대하여 全西半球를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는 共產圈이외의 工業國들이 이 禁輸措置에 참가한 이상 쿠바는 貿易機會의 상실이라는 큰 희생을 치렀다. 쿠바의 그와같은 機會의 상실로

蘇聯은 쿠바 經濟를 돕기 위한 부담이 늘어났다.

세제는 이 禁輸措置가 쿠바에 있는 美国資産 물수에 대항하는 非軍事的인 報復形態였다.

그러나 美国의 禁輸措置가 실패한 主因은 쿠바가 穀物, 石油, 機械를 美国이외의 共產圈이나 非共產圈諸國으로부터 비교적 쉽게 輸入할 수 있었고, 또 蘇聯이 적극적으로 쿠바의 사탕을 市場價格보다 비싼 값으로 사 갔기 때문이다.

2. 최근의 美国農産物輸出規制

가. 1973년의 美国의 大豆禁輸

美国이 大豆와 大豆製品을 대량으로 輸出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50年代 초기에 大豆와 同製品의 輸出額 合計는 1億5,000萬 달러 이하였다. 그러나 1955년부터 美国은 大豆, 大豆製品의 輸出擴大期間에 들어가 1970年度에는 大豆가 이미 美国輸出農産物 가운데 金額面에서 최대의 단일 產品이 되었다. 이 해에 美国은 4億4,800萬달러의 大豆油, 大豆粕과 10億7,200萬달러의 大豆를 輸出하였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農産物은 小麦과 同製品, 그리고 옥수수로 이 해에 輸出된 이 두 農産物의 額數는 각각 9億4,200萬달러, 8億2,500萬달러 였다.

1971, 73년의 달러引下, 아프리카의 旱害와 東南亞 및 韓國의 米穀凶作으로 인한 世界的인 需要增加, 페루의 魚粉減産과 그리고 1972년의 蘇聯의 穀物大量購入 등이 大豆價格에 上昇壓力으로 작용하였다. 1972年 7월에 1부셀당 3.30달러였던 大豆의 販賣價格은 1973年 1月에는 4달러, 3月에는 6달러, 6月에는 10달러를 넘었다.

1973年 6月 13日 닉슨大統領은 國內의 모든 商品價格을 60日間 凍結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農場단계의 未加工農産物은 凍結品目에서 제외하였다. 大統領은 동시에 議會에 대하여 강력한 食品輸出管理權限을 요청할 의도를 밝히고 美国이 체결한 輸出契約를 지키는 것이 大統領의 지도적인 政策이라고 밝혔다. 1973年 6月 23日에 美国政府는 1969年 輸出管理法에 의거하여 모든 나라에 대한 大豆 및 기타 油糧種子製品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다만 1973年 6月 13日 현재 유효한 大豆輸出契約의 未濟部分中 50%에 대해서만은 輸出許可書가 발급되었는데 大豆粕에 대해서는 40%만

발급되었다. 이 許可制는 1973年 8月 1日에 완화되어 6月 13日 이전에 보고된 注文의 未履行分에 대해서는 100%의 大豆 輸出이 허가되었다. 또 이해 9月 21日에는 1973年産 大豆가 市場에 나돌기 시작하는 10月 1日에 輸出許可制가 폐지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래서 大豆價格은 9月말 까지 붕셀당 약 6 달러까지 떨어졌다.

1) 大豆의 禁輸措置가 外國에 미친 영향

大豆의 輸出中止와 輸出許可制에 대한 外國의 반응은 즉각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大豆製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日本은 격분하였다. 家畜飼料 供給에 의존하였던 自由市場契約이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美國 中西部의 日本人 소유농장에서 생산한 食用高級大豆製品輸出도 필요량의 50%가 삭감되었다.

農産物貿易政策分野에서 받은 영향도 그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것이었다. 최근 몇해동안 EC共同農業政策의 保護貿易主義를 공격해 온 美國이 처음에는 완전한 수출중지로, 그 다음에는 契約량의 40~50%의 수출제한으로, 어렵게 된 國內供給事情에 대응한 것이다. 또 유럽諸國이나 日本은 食糧供給의 중요한 분야에서 供給國으로서의 美國의 信賴度가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다.

禁輸措置에 대한 長期的인 그리고 美國 大豆관계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海外의 반응은 이미 급속한 成長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 大豆産業에 대한 外國의 관심과 投資의 증대로 나타났다. 禁輸措置이전인 1972년에 美國은 大豆의 世界貿易量의 92%를 공급하였으나 그후 브라질과의 경쟁으로 1975년까지 美國의 몫은 67%로 떨어졌다.

2) 大豆禁輸措置가 國內에 미친 영향

大豆의 禁輸措置를 취한 것은 國內의 飼料不足을 막고 또 飼料와 食糧의 價格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당시의 生計費 審議會議長인 존·T·던롭 씨의 말에 의하면 禁輸措置는 「美國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美國의 農業團體들은 禁輸措置의 실시에 반대하였다. 이 단체들은 모두 他國과의 現行 契約을 파기하고 購入國으로 하여금 새로운 供給源을 찾게 만드는 것이 美國에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美國의 國際收支, 國內의 雇傭創出, 貿易장벽을 낮추기 위한 國際努力, 農産物生産者 販賣業者

에 대한 충분한 誘因 유지 등을 위해서도 農産物輸出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美国大豆協會의 디모어 존슨會長은 1973年 7月 11日 上院農村委員會에서 행한 증언에서 大豆生産農家들은 갑작스러운 禁輸措置로 배신을 당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政府는 大豆의 増産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사할 수 있는 모든 方法을 썼기 때문에 어제의 보고에 의하면 금년은 植付面積이 24%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豆類를 심으니까 政府는 販路의 50%이상을 없애버린 것이다. 農家는 作目을 결정하여 生産体制를 갖추고 나면 收穫때까지 그것에 구속 되는 것이다. 따라서 農家는 政府의 禁輸措置로 충격을 받고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大豆販賣의 50%이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당시의 全国小麦生産者協會의 레이 데이비스會長도 같은 委員會에서 輸出削減이 政府政策에 대한 生産者의 信賴感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다. 農業者는 「自由市場」원칙이 供給過剩과 低價格時期에는 들어 맞지만 供給이 딸리고 價格이 오를 때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데이비스會長은 農業者들이 政府의 農業政策을 信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輸出政策의 變경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予想을 하지 못하는 것은 増産에 대한 큰 장애」라고 덧붙였다.

1972~73大豆販賣年度는 1973年 8月 1日에 끝났다. 이 年度의 平均庭前價格은 bushel당 4.75달러였고, 農業者最高受取價格은 1973年 6월에 bushel당 10달러였다.

禁輸措置가 실시된 무렵의 月別 平均農業者 受取價格은 다음 表와 같다.

	부셀당 달러
1973年 4月	6.14
5月	8.27
6月	10.00
7月	6.69
8月	8.99
9月	5.81
10月	5.63
11月	5.14

禁輸措置 이전에는 상승하던 大豆의 農業者 受取價格이 1973年 6月 禁輸措置가 취해진 이후에는 1/3로 내렸다가 許可制가 完化되고 未引渡分の 全量輸出을 허가한다는 발표가 있는 후부터는 bushel당 8.99달러로 올라갔다. 즉 7月比 38%의 増加인 것이다. 大豆의 豊作이 예상됨에 따라 9月까지 價格은 bushel당 6달러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그리고 美国의 大豆供給에 대한 해외의 需要壓力이 減弱되자 10月에는 許可制가 폐지되고 새 大豆가 수확되는 11

월까지 大豆價格은 6月수준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禁輸措置는 1974年の 植付面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大豆의 植付面積이 15年만에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史上 두번째로 많은 植付面積이었다. 植付面積의 5%減중 禁輸措置와 그 이후의 農場庭前價格의 下落으로 인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불순한 氣候로 播種이 늦어진 지역도 일부 있었다. 비로인한 播種의 지연, 夏季의 降雨不足, 初秋의 寒波때문에 大豆의 收量은 감소하였다.

나. 1974, 75年の 對蘇·폴랜드穀物 売却의 일시 中止

美農務省은 1973年 農業消費者保護法에 의거하여 10萬 t을 초과하는 모은 輸出用穀物売却에 대해서는 売却完了 후 24시간내에 日報를 提出하도록 요구하였다. 1974年 10月 초순에 聯邦政府는 이 屈出制를 실시한 결과 두穀物會社가 300萬 t의 小麦 및 飼料穀物을 蘇聯에 売却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드大統領을 비롯하여 다른 政府閣僚는 美國國內供給事情이 어렵고 옥수수의 최종적인 收穫量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穀物去來에 개입하여 穀物去來商으로부터 자주적으로 売却을 중지하겠다는 승락을 받아내었다.

1974年 10月 7日 政府는 大豆 및 穀物輸出에 대한 事前承認制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1日 5萬 t 이상이나 또는 1週間에 10萬 t 이상을 売却할 경우에는 當局에 通報하여 事前承認을 얻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해 10月말 사이몬財務長官은 對蘇穀物売却을 줄이는 交渉을 다시 벌였다. 事前許可制는 1975年 3月에 폐지되었으나 輸出屈出制는 그대로 실시되었다.

1975年 6月 9日 美農務省은 蘇聯穀物生産의 75年予測値를 수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그후 일련의 下方修正을 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蘇聯은 7月하순까지 몇몇 개별적인 商談을 통하여 900萬 t 이상의 穀物을 購入하게 되어 7月 24日에는 다시 事前通告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8月 3日 美農務長官은 美國의 옥수수收穫高와 蘇聯의 穀物收穫高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蘇聯에 대한 그 이상의 売渡를 「留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비공식적인 「留保」는 8月 11日 作況報告가 발표되면 철회될 예정이었지만 中西部의 旱魃로 美國의 옥수수收穫高가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바람에 그 철회는 당분간 연기되고 말았다.

禁輸措置는 8月 18日에 美國의 勞動問題와 결부되었다. 美國의 港灣勞動者가 美國의 消費者나 海運業者를 보호하는 새로운 穀物輸出政策을 政府가 실시하지 않는 한, 蘇聯이 이미 購買한 穀物の 船積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포드大統領은 AFL-CIO의 조지 미니會長과 협의한 후 8月 18日에 穀物問題에 관하여 蘇聯과 長期協定을 교섭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는 동시에 蘇聯에 대한 穀物の 禁輸 措置를 10月중순까지 연장시켰다. 그리하여 港灣勞動者들도 蘇聯이 이미 購入한 穀物の 船積作業을 재개하기로 동의하였다.

美國務省은 9月 10日 공식발표도 없이 워싱턴駐在 폴란드大使館을 통하여 폴란드의 美國穀物購入計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폴란드는 그時点까지 1975~76年度産穀物을 이미 190萬 t이나 購入하고 있었다. 1975年 9月 29日 버츠農務長官과 폴란드의 발티코프스키農相間에 長期協定을 둘러싼 協商이 진척되어 11月에는 協定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美農務省은 小麥 및 옥수수의 史上 최대의 收穫予想을 발표하고 포드大統領은 10月 10日 對폴란드 穀物販賣의 解禁을 발표하였다. 포드大統領은 또 그 10日후에는 蘇聯과의 穀物 5個年協定체결과 禁輸措置의 해제를 발표하여 10月 24日에는 對蘇販賣가 11週만에 재개되었다.

폴란드는 長期協定에 의거하여 5年동안에 해마다 250萬 t의 小麥 및 옥수수를 購入하기로 동의하였다. 이 數量은 폴란드의 輸入必要量과 美國의 收穫高에 따라 해마다 20%의 變動이 허용되었다.

美·蘇의 長期協定은 1976年 10月 1日 이후에 船積되는 小麥 및 옥수수 販賣를 대상으로 하였다. 蘇聯은 이 協定에서 5年동안에 해마다 최저 600萬 t의 小麥 및 옥수수를 市場價格으로 購入하기로 약속하였다. 蘇聯은 이 協定에 따라 새로운 政府間協議를 거치지 않고 年間 200萬 t의 追加購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의 推定穀物總供給量이 2億2,500萬 t을 밑돌 해에는 이 協定에 의한 輸出用供給量を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다.

1) 1974, 75年の 穀物売却中止措置의 對外的影響

穀物の 売却中止措置에 앞서 蘇聯은 이미 1,030萬 t의 美國産穀物을 購入하였다. 이 가운데 小麥은 450萬 t 이었고 나머지는 飼料穀物이었

다. 輸出中止措置가 해제된 후 蘇聯은 다시 580萬 t의 飼料穀物을 購入하였다.

輸出中止期間中 蘇聯은 다른 市場에서 穀物을 계속 購入하였다. 이 中止期間에 다른 나라들은 높은 市場價格으로 큰 이익을 보았지만 美國政府는 蘇聯의 需要가 냉각된 다음에야 蘇聯의 追加購入을 승인하였다는 것이 美國農民들의 불만이었다. 이 輸出中止期間中에 蘇聯이 다른 여러나라에서 購入한 穀物은 710萬 t에 달했으리라고 추정된다.

蘇聯에 대한 販賣中止期間中에도 다른 여러나라에 대한 美國의 小麥이나 옥수수의 輸出은 계속되었다. 사실 1975년에 月間 최고 小麥輸出量이 보고된 것은 이 中止期間이었다. 輸出用으로 보고된 옥수수의 販賣量은 이 輸出中止措置가 해제된 1個月후에 절정에 달하였다.

폴란드와 蘇聯에 대한 販賣留保가 불러일으킨 거의 모든 논쟁에는 美國 국내의 사람들도 끼어들었다. 美國의 農業団体는 輸出中止와 港灣労働者の 보이콧행위를 市場作用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방해행위라고 반대하였다. 日本이나 西歐諸國의 反應이나 反對는 별로 없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制限措置가 蘇聯이나 폴란드 이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日本과 西歐諸國은 그 措置의 標的이 非市場經濟國이었다는 理由로 美國이 합법적인 수단을 취했을 뿐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았다. 外國에서 문제를 즉각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大豆의 禁輸와 마찬가지로 穀物의 禁輸로 말미암아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多國間貿易交渉에서 美國은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랐다.

2) 1974, 75년의 穀物販賣中止에 따르는 国内的 影響

1975년의 對蘇, 폴란드 穀物販賣中止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강력한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国内 農業者들은 3個月間의 輸出中止로 穀物販賣面에서 推定 10億달러, 그리고 保管費面에서 추가로 약 10億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農業代弁者는 輸出管理法이 輸出規制의 法的 權限을 규정하고 있지만 大統領은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²⁾ 지적하였다. 그래서 全國小麥生産者協會(NAWG)는 輸出中止 및 美·蘇穀物協定 交渉은 違法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法廷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生産農家に 의하면 全力을 다하여 生産해 달라는 農務省의 요청에 따라 한 치의 땅도 남기지 않고 植付를 하였는데, 그 풍부한 收穫物을 거

대한 購買國인 蘇聯에 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포드 大統領이 1975年 5月 1日 農産物價格支持法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때 발표한 다음과 같은 聲明의 귀절을 씌운 심정으로 상기하는 것이었다.

「대단히 어려운 환경속에 있으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農業者는 금년에도 온 힘을 生産에 기울이고 있다. 나는 그들의 生産物에 대한 강력한 輸出政策을 지지하는 바이다. 지난 2年동안에 農産物輸出이 두번 제한을 받은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현재 美國은 모든 輸出制限을 제거하였으며 재차의 輸出制限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해 불결의를 하고있다. 美國의 農産物은 世界市場에 무제한으로 출하되어야 한다.」

農業者는 충분한 最低價格의 保證도 거부되고 그 다음에는 높은 世界價格의 혜택을 받을 기회도 빼앗겼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農民団体인 American Farm Bureau(afb)는 輸出中止를 「政治的 強奪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NAWG도 「價格水準과 供給水準이 動機를 부여한 政治的措置」라고 단언하였다.

國際港灣労働者協會에 소속한 노동자들이 蘇聯行 船舶에 대한 穀物船積을 거부 하였을 때 農業界는 특히 격분하였다. 小麦生産者의 대변인은 港灣労働者의 행동이 美國國內의 인플레이션인 食糧價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비웃었다. NAWG는 「國民은 港灣労働者가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 船積拒否는 소비자비용을 인상하려는 政府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고 그들의 이익이 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小麦生産者協會의 8州聯合會인 Great Plains Wheat(GPW)는 港灣労働者의 보이코트가 노동자의 生計費條項의 引上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寄与要因이라고 주장하였다. 販賣를 둘러싼 誤解를 없애기 위하여 美國農業理事會는 AFL—CIO側과 農業者의 접촉을 도모하고 穀物輸出의 중요성, 農業과 보이코트의 관계에 대한 討論을 촉구하기 위하여 無料「할 라인」(長距離緊急用電話線)을 개설하였다.

1975年 포드 大統領은 港灣労働者의 보이코트를 해결하기 위하여 냉정하게 交渉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NAWG의 돈 우드워드會長은 大統領에게 農業者는 장기간「냉정하게 대처」하려고 애썼다고 말하고 「오늘날

美国에는 蘇聯에 販賣한 穀物の 船積을 보이코트하도록 노동자들에게 위법적이고 불합리하게 요구하여 政府의 權力을 탈취하려는 勞組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農業団体는 9月 11日의 作況報告에서 小麦, 옥수수, 大豆의 供給量이 풍부하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輸出中止가 10월까지 연장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農業者들은 그 作況報告가 輸出中止에 관한 論議나 또는 經濟의 正当化를 효과적으로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로서는 輸出中止措置의 연장이 勞動組合의 요구에 대한 政治的인 굴복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輸出中止措置를 확대하여 폴란드까지 포함시킨 것은 農業指導者의 강력한 反論을 불러 일으켰다. National Farmers Union(NFU)의 토니 데칸트會長은 政府가 「價格破壞」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市場은 下降線을 치달릴 때만 自由롭게 된다」는 結論을 내렸다.

NAWG의 우드워드會長은 폴란드에 대한 販賣中止가 「小麦生産者에 대한 二重의 背信行爲」라고 규탄하였다.

10月 20日 포드大統領은 美·蘇穀物貿易協定の 조건을 발표하였을 때 農業者가 환영할 줄 알았다. 蘇聯이 이제부터는 5年間に 毎年 600万~800万 t의 穀物を 購入하는 확실한 顧客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農業団体는 그것을 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NAWG의 우드워드會長은 「生産者는 이 協定을 政府가 앞으로 5年동안 對蘇輸出規制를 공식화하는 制限의 文書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生産者는 協定の 条項에 의혹을 느끼고 그 利點을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PW의 代弁人은 이 協定이 美国보다는 蘇聯에 유리하다고 지적하였다. NFU는 이 協定이 穀物の 販賣協定과 상반되는 協定이라고 보고 앞으로 5年동안 「美国農業者의 受取價格을 낮게 억제하기 위한 恒久的인 穀物輸出規制制度」라고 비난하였다. NFU는 또 勞動組合이 蘇聯과 체결한 海運協定으로 현행 市場率을 대폭 上廻하는 運賃(運賃패리티의 300%에 해당하는)을 보장받았다고 지적하였다.

輸出中止 및 穀物協定에 분개한 農業団体는 행동을 위한 組織化를 개시하였다. NAWG는 輸出制限에 대한 大統領의 權限을 法律的 側面에서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을 法律事務所에 맡기기까지 하였다. 다른 農

業団体들도 다양한 활동을 계속 전개하였는데 노드 대코터州的 農業者들은 그들의 불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10日間 穀物販賣를 中止하기로 합의하였고, 미네소타州에서도 AFB, NFU, National Farmers Organization (NFO)의 會員들이 政策을 입안하고 穀物輸出規制 등 상호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취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부 農業団体는 또 1976年 9月 30日에 失效되는 輸出管理法의 改定을 제안하였다. NAWG의 改正案에는 穀物輸出販賣의 事前承認이 法律에서 빠지고 長期穀物販賣協定에 대해서는 上院의 승인이 필요하며 또 供給量이 國內의 必要量을 충족시키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을 農務長官이 내리지 않는 한, 大統領이 輸出을 삭감하거나 中止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農務長官은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聯邦政府의 官報에 公示하고 農業者側의 証言을 비롯하여 一般의 証言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NFU는 農業者受取價格이 패리티의 110%이하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大統領, 農務長官, 商務長官이 農産物輸出을 中止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지의 修正案을 제출하였다.

蘇聯에 대한 第1次穀物販賣가 1975年 7月에 발표되었을 때 美国農業者 平均受取價格은 小麥이 붓셀당 3.33달러, 옥수수가 2.72달러였다. 그러나 버즈農務長官이 그 이상의 売却을 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자 小麥은 3.89달러, 옥수수는 2.95달러로 價格이 올랐는데 특히 小麥價格은 8月에 붓셀당 4.11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10月에 輸出中止가 종결된 후 美国農業者의 受取價格은 붓셀당 小麥이 3.58달러, 옥수수는 2.33달러로 떨어졌다. 輸出中止를 전후한 붓셀당 月別平均 農業者受取價格은 다음 表와 같다.

(單位: 붓셀당달러)

	小麥	옥수수
1975年 5月	3.47	2.66
6月	2.92	2.68
7月	3.33	2.72
8月	3.89	2.95
9月	4.11	2.76
10月	4.02	2.62
11月	3.58	2.33
12月	3.41	2.37

農場庭前價格의 下落分 가운데 통상적인 市場 收穫高의 변동으로 인한 몫이 얼마나 되고 穀物의 輸出中止로 인한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農産物 價格은 收穫期에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예를 들면 小麥의 價格은 6月에 낮다. 그런데 小麥과 옥수수의 受取價格은 輸出中止 期間에 최고였다는 것이 재미있다. 9月 11日의 作況報告가 발표되기 전에 價格이 오

른 理由의 하나는 供給量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貿易業者가 輸出抑制措置의 폐지를 예상하고 大量購入을 계속한 것도 한 原因이 된것으로 보인다.

3. 美國의 輸出制限의 效果

앞에서 언급한 美國의 여러가지 措置 가운데서 1974, 75年の 對蘇穀物 輸出 中止措置만은 대체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아도 좋다. 1974年 가을에 美國政府는 美國의 價格 및 供給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條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美·蘇穀物購入契約를 재조정할 수가 있었다. 옥수수 收穫高 때문이든 아니면 港灣勞動者의 보이코트가 이유이든, 美國政府는 1975년에 輸出中止措置를 취함으로써 蘇聯에게 長期穀物購入協定(美國이 生産·流通計劃에 蘇聯의 穀物購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을 체결하도록 壓力을 가할 수 있는 手段을 얻었다.³⁾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버즈農務長官을 비롯한 政府當局은 최종적으로 美國의 穀物生産에 추가로 年間 600萬~800萬 t의 支持를 부여하는 (美國農業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水準)購入保證을 協定하였다. 美國內 대부분의 農業團體는 輸出中止 措置에 반대하였으나 内外 言論의 일반적인 반응은 蘇聯과 폴란드와의 去來에 대한 이 措置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反應, 다시 말하면 적어도 나쁜 反應이 없었다는 것은 非市場經濟國에 대항하는 外交手段으로 食糧을 사용하는 것을 國內 대부분의 政治團體가 적어도 묵인하고, 또 소수의 다른 政治團體는 사실상 그것을 환영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1969年 이전의 中共에 대한 전면적인 輸出禁止措置는 中共經濟에 대한 外國貿易의 寄与가 작고, 특히 美國의 몫이 더욱 낮았기 때문에 經濟的意味로 성공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課題가 너무 컸고 이용할 수 있었던 手段이 너무 적은데다가 처음부터 中共은 다른 供給源을 충분히, 그리고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1956년까지 美國의 대부분의 同盟國은 中共과의 通商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으며 輸出 中止政策이 美國과 同盟國間에 問題가 되었기 때문에 그 政治的인 效果도 의심스럽다.

쿠바에 대한 輸出中止 措置는 中共의 경우보다도 효과적이었다. 쿠바는

그措置를 취하기 전까지는 經濟的으로 美國에 의존하였고, 또 쿠바內에서는 美國製 設備과 機械, 車輛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輸出中止措置가 최초의 몇해 동안에는 쿠바에 상당한 打擊을 가하였다. 杼쿠바 禁輸는 또 美州機構의 政治적인 재결합을 촉진시킨 점에서 최초의 몇 해 동안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쿠바도 中共과 마찬가지로 美國의 同盟國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貿易을 개시하게 되어 輸出中止措置의 政治的, 經濟的 효과는 떨어졌다. 禁輸費用이 利益을 上廻하였는지, 上廻하였다면 언제부터 上廻하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이다.

中共과 쿠바에 대한 輸出中止措置의 경우를 보면 美國農產物貿易의 역할은 輸出中止措置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輸出中止로 입힌 손해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취해진 모든措置와 특히 쿠바의 경우에는 予備部品과 機械不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輸出產品의 販賣拒否, 특히 拒否時点에서 輸入國에게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產品의 販賣拒否를 통하여 外交上 상당한 壓力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輸出規制 試圖 가운데서 美國의 長期的인 外交政策과 經濟利益에 최대의 손실을 끼친 것은 아마도 1973年의 大豆의 輸出中止措置일 것이다. 大豆價格의 上昇이 國內에 미친 영향에 대한 政府의 관심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일지는 몰라도 유럽과 日本과의 經濟的, 政治的 關係에 대한 극도로 否定的인 영향과 그와 같은 政府의 관심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否定的인 영향은 輸出中止措置가 美國의 國內의 理由때문에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돋보이게 해준다. 輸出禁止措置가 杼外政策의 手段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또 그措置에 대한 外國의 반응이 지극히 否定的이었던 것을 보면 그러한 환경하에서는 그杼外政策의 手段으로 제안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輸出中止措置에 대한 先進市場經濟國의 반응 자체가 市場支配를 가능케 하는 美國의 食糧과위의 存在를 시인하는 증거였다.

小麦, 飼料穀物 및 大豆의 輸出水準을 現態대로 유지하려는 美國에게는 그 戰略이 신뢰할 수 있는 供給國으로서의 名聲을 유지함으로써 새 市場을 개척하고 또 이미 개척한 市場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大豆의 輸出中止 措置는 그 戰略의 두번째 要素를 직접 손상시켰다. 또 先進市場經濟에 對하여 市場을 지배하기 위하여 食糧과위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다른 나라는 代替의인 供給源을 다른데서 찾거나 또 그것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유발시킬지도 모른다. 브라질의 大豆가 그런 경우였다. 끝으로 GATT加入國도 大豆의 輸出中止 措置의 影響을 받았으므로 輸出中止 措置의 실시는 다른 나라, 특히 유럽共同體의 農産物 貿易制限에 對한 美國의 攻勢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4. 長期供給協定の 費用과 收益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美國政府는 1975年初 이후 蘇聯과는 공식적인 長期供給協定을, 그리고 日本과는 「비공식적」인 協定⁴⁾을 맺고 폴란드와는 협의를 가졌다. 이와같은 貿易協定の 잠재적 影響력은 큰 것이기 때문에 美國의 經濟的, 政治的 關係에 대한 그 影響에 대해서는 주목하여야 할 것이나 요컨대 그 長期供給協定の 費用과 收益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方程式의 一邊인 收益을 보면 蘇聯의 경우 年間 최저 600萬 t의 穀物 購入 協定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美國의 農業者나 家畜生産者는 그들의 供給能力과 價格을 계산할 때의 要因을 구체적인 數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蘇聯이 어떤 해에는 대량의 穀物을 購入하고 그 다음 해에는 購入하지 않는 데서 오는 混亂도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한 政府는 協定이나 協約이 農産物의 높은 價格과 오랫동안 大量生産을 유지하는데서 오는 單位當 낮은 生産費의 유지에 뒷바침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美國의 최저 穀物收穫高인 2億2,500萬 t과 특별한 경우의 協議義務라는 두 條件은 穀物의 價格과 產出水準의 不安度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와 蘇聯과의 協定은 1974年の 穀物販賣契約의 「再調整」과 1975年の 穀物販賣의 「中止」 등과 같은 돌발사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日本에게는 非公式의인 合意가 1973年の 大豆輸出中止 措置에 뒤이은 혼란의 반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3個國과의 協約은 모두 美國産品에 대한 그 保證이나 期待最低 購入量을 제시하는 것이다. 끝으로 1976年の 大統領 予備選舉의 열기속에서 「緊張緩和」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穀物協定은 緊張緩和로 추진될 兩國間 協約이라는 그물의 한 매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長期供給協定에는 몇 가지 否定的인 면이 있다. 첫째로 對蘇協定과 같은 것은 과거는 매우 攪亂的인 영향을 주다가 최근에야 겨우 購入國이 된 나라에게 다른 購入國보다도 높은 優先順位를 부여한 듯한 느낌을 준다.

長期供給協定은 표면상으로는 相對國에 優先權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供給이 부족해질 때에는 결과적으로 그 나라를 優先해 주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랫동안 美國과 友好關係를 유지해 오고 美國 農産物輸出에 의존해 온 전통적인 同盟國이 제외될지도 모른다.

둘째는 長期協定이 價格을 안정시킨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인데 그것은 人爲的으로 價格을 높은 水準으로 유지하는 것이 된다. 低開發國은 언제나 購入線의 밑에 있기 때문에(또는 需給事情이 어려울 때에는 先約을 履行하기 위해 삭감되는 公法 第480號에 의한 商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두 側面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나라가 商業市場에서 產品을 購入할 경우에는 價格이 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게다가 蘇聯과 長期協定을 맺을 경우에는 일종의 輸出保證水準이 규정되지만 輸出이 그 이하로 내려가도 美國은 쉽게 外交壓力을 가할 수가 없다. 그러한 協定이 없을 경우 蘇聯이 穀物을 요구하고 美國이 어떤 政治的, 經濟的讓步를 얻어 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鴻정을 零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協定은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800萬 t부터 鴻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長期協定과 그 協定이 제공하는 特惠가 市場의 資源配分 機能을 歪曲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II. 美國의 通商政策과 農産物 輸出拡大의 相互關係

世界各國의 農産物 貿易政策은 대개 高度의 保護貿易主義가 특징이다. 최근 10年間의 美國 農産物貿易政策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美國의 政策은 美國의 輸出貿易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낮은 比重과 輸入과의 激烈한 競爭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農業이 輸出의 주요한 構成要素가 되면서 美國의 農産物貿易政策은 변화하게 되었다.

美國의 農業은 第一次 世界大戰中の 内外의 需給불을 고비로 심각한 불

況期에 접어들어 第2次 世界大戰이 시작될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農産物貿易은 農業生産과 병행하여 감퇴하였다. 1920會計年度에 38億달러였던 美國의 農産物 輸出은 1922會計年度에 19億달러로 떨어졌다. 1922會計年度부터 1930會計年度까지의 農産物 年間 平均輸出額은 불과 17億달러였다. 美國의 農産物輸出은 大恐慌의 여파로 더욱 줄어들어 1935~39年 平均 農産物 輸出額은 7億5,000万달러를 下廻하였으며 年間 1億3,800万달러의 棉花와 1億2,800万달러의 煙草가 주요한 輸出農産物이었다. 이 기간에 輸出이 감소된 한 例로 世界의 小麥輸出에 차지하는 美國의 몫은 1924~28年の 22%부터 1934~38년에는 8%로 떨어졌다. 이 기간의 年間平均 穀物輸出額은 1億달러를 下廻하였고, 大豆油脂의 輸出額은 2,900万달러에도 미달하였다. 1935~39년에 美國은 世界 第4位의 小麥輸出國이었었는데 小麥의 年間平均輸出量은 약 4,000万부셸이었다. 이것은 캐나다의 1億3,900万부셸, 아르헨티나의 1億1,900万부셸, 濠州의 1億400万부셸에 훨씬 미달하는 것이었다.

第2次 大戰초부터 1945年初까지의 美國 穀物供給의 特色은 國內需要를 충분히 충족시킬 量은 있어도 援助나 貿易에 돌릴만한 여유는 거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美國의 穀物輸出이 大戰 초기에 聯合國의 戰爭 노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컨대 1943年の 경우를 보면 聯合國 전체의 小麥·小麥粉輸出 余力에서 차지하는 美國의 比率은 4%에 불과하였다. 美國의 穀物輸出이 다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1945年 이후이며 大豆가 주요한 輸出品目이 된 것은 1953年 이후였다.

美國은 1947~48年度부터 穀物の 持續的인 過剩生産, 剩餘在庫와 穀物 價格의 下落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종 援助計劃을 계속시킴으로써 輸出貿易은 美國 國內生産의 상당한 比率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면 1953년까지 美國의 生産에 차지하는 輸出의 比率은 米穀이 66%, 小麥, 小麥製品이 48%, 수수가 45%였다. 穀物 및 大豆의 輸出水準은 1956~57年度 이전에는 계속 불규칙하게 上昇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폭적인 變動이 그치고 계속적으로 上昇하기 시작하였다. 몇해 동안은 小麥輸出의 増大를 촉진시킨 주요한 誘因이 公法 第480號 計劃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商業販売가 農産物輸出 増大의 주요한 要素가 되었다. 그러나 穀物

및 大豆의 輸出水準이 1956會計年度 이후부터 著실히 上昇하였다고는 하지만 美國의 農産物輸出이 年間 60億달러를 돌파한 것은 1970會計年度 이후이며, 100億달러에 달한 것은 1972會計年度였다는데 留意할 필요가 있다. 美國의 農産物 貿易政策은 주로 多年間에 걸친 低輸出水準과 격렬한 輸入競争을 반영하여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世界穀物大豆市場에서 美國의 支配的 地位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1. 農産物の 商業輸出에 영향을 미치는 法制

第1次 世界大戰 이후 찾아 온 심각한 農業恐慌에 대응하여 1921年 關稅法은 거의 모든 國內産 農産物에 대한 關稅를 均正하였다. 1930年 스무트 호레이關稅法은 關稅率을 더욱 높게 올렸다. 大恐慌中에는 이따금 特定 農産物에 대한 特別關稅가 當該農産物の 販賣價格을 上廻하는 경우도 있었다. 1934年에 互惠通商協定法이 議會를 통과하자 關稅問題에 관한 意思決定은 議會로부터 行政機關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大統領은 이 法에 의거하여 互惠關稅에 관한 交渉에 있어서 關稅를 一定率 만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互惠通商協定法の 이따른 연장에 대하여 일부 農業 団体는 반대하였지만 農産物關稅는 그후 28年 동안에 대폭적으로 내려다.

農業調整法이 議會를 통과 한 것은 1933年이었다. 그 2年뒤에는 美國 關稅收入의 최고 30%가 同法の 1935年改正法 第32條에 의거하여 海外市場에서 剩餘産品の 販賣를 가능케 하는 補助金으로 輸出奨励에 돌려졌다. 第2次 世界大戰 전까지 이 第32條 補助金은 小麦, 小麦粉과 綿花에 지불되었다.

美國大統領은 또 1935年 農業調整法(改正)의 第22條에 의거하여 美國의 農産物 價格·所得支持計劃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農産物 輸入에 대하여 輸入割当制 내지는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는 權限을 갖게 되었다. 이 條項이 처음으로 발동된 것은 1939年인데 이 때는 특정 綿花 製品에 輸入割当이 시행되었고 1941年の 輸入割当 対象品目은 小麦, 小麦粉과 小麦製品이었다.

農業調整法이 議會를 통과하고 美國의 價格支持計劃이 확립됨에 따라 剩餘農産物이 누적되어 第22, 32條에 의거한 計劃의 실시를 논리상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國內 價格支持는 過剩生産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農業者에게 價格이 고정된 商品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生産하여 所得을 極大化시키려는 傾向이 있었기 때문이다. 國內의 支持價格은 國際 價格을 대폭적으로 上廻하였기 때문에 價格이 너무 비싼 美國 剩餘農産物을 世界市場에 輸出 하려면 第32條 補助金에 相當한 金額이 必要하였다. 價格支持의 第2次 效果는 價格이 보다 비싼 國內産品을 國內市場에서 배제시키는 外國産 農産物의 輸入增加였다. 이 추세에 對항하기 위해서는 輸入産品에 關稅를 부과하여 그 價格을 國內支持價格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政세하에서 國內價格 支持制度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第22條의 輸入割當에 相當하는 措置가 必要하게 되었다. 더구나 多國間 通商協定으로 關稅가 서서히 인하됨에 따라 輸入割當의 必要性은 더욱 높아졌다.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난 뒤 農産物輸出을 포함하여 美國의 輸出을 규제하는 法定權限의 主要한 根拠가 된 것은 오늘날 輸出管理法(Export Administration Act)으로 알려진 法律이다. 이 法은 1949년에 現行 형태로 처음 제정되어 食糧輸出을 억제하는 行政權限의 근거가 되고 있다.

2. 農産物貿易과 國際貿易機構 및 關稅·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世界 第2次大戰 직후에 美國 國務省이 계획한 國際組織의 하나는 國際貿易問題에 對처하기 위한 機構였다. 國務省은 美國의 貿易相對國과의 兩國間 討議에 이어 1946年 가을 「유엔의 國際貿易機構憲章案」(Suggested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을 발표하였다. 이 國際貿易機構(ITO)憲章案은 補助金, 關稅引下, 輸入割當制의 最終적인 철폐, 完全雇傭의 유지, 商品協定創設基準, 약간의 民間投資規約條項에 관한 原則 및 規約을 규정한 것이었다. 트루만 政府는 ITO의 범위가 넓어 ITO憲章을 條約으로 승인을 얻기 위해 議會에 제출할 생각이었다.

ITO憲章을 기초하는 會議은 네번 열렸다. 1946년에는 런던, 1947년에는 뉴욕과 제네바, 1947~48년에는 하바나에서 열린 것이다. 1947年 뉴욕과 제네바에서 열린 ITO起草委員會 會議에서는 GATT (關稅·貿易에 관한 一般協定)가 ITO憲章의 起草와 병행하여 交涉對象이 되었다. GATT는 ITO憲章이라는 보다 큰 틀속에서 특수한 通商協定이 될 예정이었다.

이 특수한 通商協定은 關稅의 上限에 관한 일련의 約束으로 구성될 예정이었고 「一般協定」(그 대부분은 ITO憲章中の 通商政策에 관한 條項으로 작성되었다.)을 수반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ITO憲章에서 通商條約에 흔히 있는 條項만을 뽑아 포함시킨데 지나지 않지만 그 理由는 美國이 通商協定法の 1945年 延長法에 의거하여 GATT에 관한 交渉을 벌이고 있고 이 延長法은 政府에게 「海外通商協定」을 받아들이는 權限밖에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ATT는 보다 포괄적인 ITO憲章과는 달리 通商協定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美國은 1948年 行政府의 協定으로 GATT에 加入하였다. 이것은 GATT에 加入한 이래로 美國의 기본 구상이 되고 있다.

ITO憲章의 最終案은 1947年 11月부터 1948年 3月까지 하바나에서 交渉이 거듭되어 약 13개월뒤인 1949年 4月에 트루만大統領이 ITO憲章을 議會에 제출하였다.

1950年 봄 下院外交委員會는 憲章에 관한 公聽會를 열었으나 當委員會는 審議報告를 하지 않아 1950年 12月 政府는 ITO憲章에 관한 議會承認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다.

남은 것은 GATT인데 그것도 發議된 이래로 8次에 걸쳐 修正되었다. 다음 引用文은 허술하게 구성된 一般協定の 運營의 便益을 개진하고 있다.

「GATT(더 정확히 말하면 GATT에 加入한 여러 政府)는 實務의인 節次와 規則을 세움으로써 効果적인 貿易交渉을 가능케하였을 뿐만 아니라 一般原則의 틀을 파괴하거나 通商上의 報復에 의한 貿易縮小過程을 始動시키지 않고도 調整, 協議, 紛爭의 和解 및 加入國의 特殊問題 調整을 위한 體制를 整備하였다. 이 프라그마티즘과 伸縮性 때문에 GATT 原則은 전면적인 적용을 언제나 확보할 수 없고 또 規則違反도 묵인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交渉過程은 계속되고 있다.⁵⁾」

GATT는 고정된 일련의 規約로서가 아니라 關稅 및 기타 특정 通商障壁에 관한 한정된 協定과 특정 原則에 留意하면서 貿易相對國間의 調整을 교섭하기 위한 틀로 생각되었다.

가. GATT와 農業調整法 第22條

GATT가 發足한 당초부터 그 規定의 일부 部分과 美國 農產物 貿易政策 사이에는 절박한 關係가 있었다. 1948년에 議會는 農業調整法을 개

정하여 美国이 이미 가입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가입할지도 모르는 國際協定은 農業調整法 第22条에 優先한다는 規定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2, 3年後에 第22条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즉 「지금까지 實施되었거나 또는 美国이 앞으로 가입하는 通商協定 내지는 기타 國際協定이라고 할지라도 本条項에 저촉하는 방식으로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議會는 1951년에 1950年防衛生産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을 개정하여 油脂 및 특정 乳製品에 관한 輸入割當을 요구하는 条項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이 GATT를 위반하는 것은 분명하다. 防衛生産法の 權限에 의거하여 부과된 輸入割當때문에 손해를 입은 和蘭은 異議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GATT委員會에서 和蘭이 美国에게서 받은 손해에 상당하는 關稅讓許를 철회한다는 合意가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되었다. 防衛生産法에 의하여 결정된 輸入割當은 1953년에 第22条의 規定으로 옮겨갔다.

1951년에 第22条가 개정되고 또 防衛生産法도 개정되어 1954년에 美国은 GATT 第11条의 적용에 관한 義務免除(웨이버)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존 H 잭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GATT가 義務免除를 승인하든 말든 美国이 議會가 결정한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고 분명하였다. 만일 美国이 義務免除를 얻지 못하고 議會에서 제정한 法律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GATT의 法的原則은 타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美国은 GATT를 탈퇴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⁶⁾」

義務免除는 第22条의 운영에 관한 年次報告를 GATT에 제출한다는 條件付로 승인되었다. 美国은 그 이후 이 報告義務를 줄곧 준수해 왔고 이 第22条에 의거한 輸入割當制는 현재도 특정 農産物에 적용되고 있다. 다음 表는 지금까지 第22条의 割當制가 적용된 農産物과 그 적용 年度를 밝혀주는 것이다.

1939年	綿花
41年	綿花, 小麥
52年	綿花, 小麥, 大麥, 귀리, 食用堅果, 特定酪農品
59年	綿製品, 小麥·小麥製品, 落花生·落花生油, 胡麥·胡麥粉, 桐實·桐油
64年	綿花·綿製品, 小麥·小麥製品, 特定酪農品, 落花生
75年	綿製品, 特定酪農品, 落花生

이 第22条의 실시와 관련된 美国側の 義務免除는 GATT가 준수되지 않은 長 現저한 한 例인데 다른 나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준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의 다른 加入国도 公 公연히 GATT에 위반 하여

農産物貿易에 非關稅障壁을 유지하고 있다. 1950年代와 60年代 초에는 GATT의 農産物貿易에 관한 条項이 계속 위반되어도 GATT에 参加된 各国代表가 거의 불쾌감을 갖지 않았고, 또 非關稅障壁의 철폐 時期를 제안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을 만큼 GATT위반이 茶飯事가 되고 있었다.⁷⁾ 1962년에 GATT의 農業担当常任위원회는 GATT에 가입한 34個国과 협의한 결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적어도 하나나, 때로는 數種의 保護措置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乳製品의 경우 34個国 가운데 31個国이 1種의, 경우에 따라서는 數種의 非關稅障壁을 설정하고 있었고, 小麥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小麥輸出国에 非關稅障壁이 설정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EC의 共同農業政策(CAP)이 실시되기 전에도 벨지움, 西獨, 룩셈부르크가 GATT에 대하여 義務免除를 요청하였다.

나. GATT와 第32条

GATT 자체는 農産物 輸出補助金を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第16条(3)項만이 GATT加入国에게 農産物 輸出補助金의 사용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 그러나 本条項은 또 加入国이 農産物의 輸出増進을 촉진시키는 補助金을 교부하더라도 「世界貿易에 있어서 当該產品이 차지하는 몫이 公평한 수준을 넘게」 補助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美国은 GATT가 발족한 당초부터 各種 農産物에 대하여 農業調整法 第32条에 의거한 補助金 支出을 계속해왔다. 綿花와 小麥이 가장 현저하였다. 美国이 穀物에 대한 輸出補助金を 끊은 것은 1972年이었다. 그것은 蘇聯이 穀物을 대량으로 購入할 것이 분명한데도 對蘇 小麥 輸出에 尙畧 62센트의 補助金을 支払한 사실을 둘러싸고 論爭이 벌어진 뒤의 일이다.

公法 第480号에 의거한「平和를 위한 食糧計劃」이 실시된 최초의 몇 해 동안에 外國의 貿易專門家나 農産物 輸出競争國이 그 特別条項에 의한 販賣規定을 강력히 반대한 사실은 주목하여야 한다. 輸出補助金과 特別條件下의 販賣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것은 이미 알려진 바 있지만 公法 第480号에 의한 贈与와 販賣(美國의 剩餘農産物로 구성되어 있다)가 市場을 효과적으로 先取하여 다른 供給國을 몰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50年代 후반의 폴란드市場과 1965~66年の 印度市場에서 차지한 美國의 몫은 公法 第480号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美國 국내에는 公法 第480号를 食糧援助로 보는 사람도 일부에는 있었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은 이 計劃을 補助金에 의한 剩餘處理로 알고 있었다.

3. 農産物貿易政策을 둘러싼 최근의 여러 문제

1950年代 초반부터 1960年代 초반에 걸쳐 유럽은 美國産 農産物을 販賣하는데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市場이 되었다. 그리하여 美國은 農産物의 自由貿易原則을 더욱 重視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EC의 共同農業政策이 1960年初에 수립됨에 따라 美國의 農産物輸出은 保護貿易主義의 강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EC와 美國間에 벌어진 전형적인 紛爭은 1962年の 「닭 戰爭」이었다. 이 때 EC가 家禽政策(두 可變課徵金, 즉 無差別關稅와 EC의 非加入國만을 대상으로 한 關稅를 결합시킨 것)을 실시하는 바람에 美國의 家禽輸出은 줄어들었다. 美國의 公式提訴에 이어 GATT는 EC의 家禽政策으로 인하여 美國의 輸出業者가 입은 손해가 年間 약 4,600萬달러에 달했다고 단정했다. 美國은 GATT 第27條에 의거하여 1964年 1月 EC의 주요 輸出品目인 트럭과 브란디의 輸入에 대하여 약 4,600萬달러에 상당하는 關稅讓許를 철회함으로써 EC에 보복하였다. 닭戰爭이 더 이상 격화되지는 않았지만 美國과 EC間에는 다른 紛爭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최근에는 美國의 大豆輸出이 EC의 剩餘粉乳처리 문제로 좌절된 사례가 있었다.

1964~67年の 케네디 라운드貿易交渉에서 美國은 工業製品貿易에 대한 美國의 關稅讓許를, 農産物貿易에 대한 다른 GATT加入國의 關稅讓許와 링크시키려고 試圖하였다. 또 그 交渉에서는 EC共同農業政策의 輸入制限

規定을 제한하는 특정 目標도 설정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GATT의 農業關係規則을 자진하여 준수하려는 나라가 美國 이외에는 없었고, 또 美國이 계속 農業調整法 第22條의 義務免除로 생기는 특권적인 地位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특정 目標은 달성할 수 없었다. 美國의 立場은 특히 지키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1962年 通商擴大法の 第2章에는 農業調整法 第22條의 權限의 保留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農産物에 대한 關稅의 대폭 引下가 交渉되어 非關稅障壁은 農産物貿易의 自由化에 대한 더 큰 阻害要因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생겼다.

農産物 貿易政策을 둘러싼 紛爭은 제네바의 多國間 貿易交渉에서 계속되었다. 美國은 工業製品의 貿易障壁과 동시에 農産物의 貿易障壁도 검토 대상으로 삼으려고 또다시 시도하였다. EC는 共同農業政策을 변경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農産物貿易의 自由化에도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工業製品 貿易交渉과 農産物 貿易交渉을 링크시키거나 農業에 대한 非關稅障壁을 철폐하는데도 찬성하지 않고 있었다. 輸出補助計劃을 철회한 美國은 모든 農産物의 商業輸出에 대한 補助金支出을 폐지하도록 EC에게 압력을 넣었다. 農業調整法 第22條에 의거한 輸入割當制과 GATT의 義務免除가 論争點이 되었다. 버츠美農務長官은 外國의 輸出補助金の 폐지를 포함한 擴大交渉의 一環이라면 第22條에 의한 輸入割當制의 폐지를 交渉對象으로 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美國의 農産物 貿易政策은 GATT가 創設됨에 따라 GATT의 協商테이블에서는 農産物貿易의 自由化에 찬성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GATT에 違反하여 특정 輸出入規制措置를 여전히 취하는 모순을 범하게 되었다. 美國의 貿易相對國이 이와 똑 같은 行動을 취했다고 하여 놀라운 일은 아니다.

第2次大戰 후의 초기단계에서는 國務省이 農産物貿易의 自由化를 촉진하고 農務省이나 農業關係者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美國農業이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이 강화됨에 따라 美國內의 農業關係者는 서서히 自由貿易을 찬성하는 立場으로 바뀌어갔다. 다른 市場에로의 接近이 農産物 輸出을 높은 水準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要素가 되었기 때문이다. 美國의 農業者를 대변하여, 食糧輸出을 政治

의 手段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國務省에 반대한 것은 農務省이었다.

III. 食糧을 外交目的에 사용할때의 国内 政治問題

— 農業關係者の 關心 —

美國의 食糧과위를 外交目的에 사용하는 문제를 美國의 農業界는 대체로 農産物市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觀點에서 검토해왔다. 穀物의 대규모 剩餘가 특징이었던 時期에는 農業關係者가 일반적으로 農産物의 商業輸出計劃과 開發途上國에 대한 讓渡販賣를 지지하는 한편 販賣를 억제하기 위한 政府의 市場介入은 金錢과 市場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国内農業者를 희생시켰다고 주장하였다. 農業을 대변하는 사람은 만일 그와같은 市場破壞가 계속되면 農業者는 최선을 다하여 生産하려는 誘因과 資力을 모두 잃거나 한쪽을 잃게되어 美國經濟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食糧과위와 農業政策

주로 都市의인 美國에서는 食糧을 外交目的에 사용하는 提案에 대한 農業生産者의 反應이 都市의 값싼 食糧에 대한 要求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經濟的 利益이 항상 輕視될 염려가 있다는 생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都市住民은 食糧의 小売價格을 낮게 억제하기 위한 農産物의 輸出制限에 찬성하겠지만 農業者들은 그들의 利潤을 極大化시키고 또 国内剩餘 農産物을 販賣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世界市場 接近을 요구하는 것이다. 農業關係者는 国内的인 動機에 바탕을 둔 農産物의 輸出規制提案이 外交上的 理由로 正當化될 위험과 또 都市와 勞動關係者가 對外政策에 입각한 輸出規制提案을, 이 提案으로 인하여 생길 国内價格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지할 위험에 대하여 매우 敏感하다. 따라서 거의 모든 農業團體는 平和時의 美國 農産物輸出에 대한 政府의 制限措置에 반대하고 이와같은 輸出制限을 위한 광범위한 緊急權限을 大統領에게 부여하는 法律에 반대해왔다.

外交上の理由로 農産物の 輸出을 規制하는데 대한 農業団体の 疑心은 그들이 美国의 農業政策 形成過程에 대한 支配力을 잃었다는 생각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오랫동안 美国의 農業政策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세력은 農業団体, 州立大学, 聯邦農務省, 農業出身 上下兩院議員이었다. 그러나 1972年 이후에는 政策形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져서 消費者団体, 労働組合, 聯邦貿易委員會(FTC), 國務省, 労働省, 議会の 特別委員會도 참여하게 되었다. 農務省內에서조차도 農業의 利益만이 유일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都市를 중심으로 한 食糧供給計劃이 農務省 予算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커져 政策当局은 生態學, 公民權, 団体交渉, 食糧의 小売價格 등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農業政策에 대한 支配力은 1975년에 명백히 변화하였다. 消費者团体와 労働組合은 蘇聯의 穀物購入으로 인한 食糧價格의 上昇을 우려하고 食費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輸出을 규제하도록 政府에 압력을 가하였다. 勞組는 對蘇穀物船積拒否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로 消費者団体の 우려를 거론하였는데 農業者가 생각하는 진정한 理由는 전혀 다른데 있었다. 港湾労働者の 作業中止를 해결한 교섭에는 組合指導者와 政府官吏는 참석하였지만 農業者代表는 초청을 받지 못하였다. 政府가 穀物の 輸出中止 措置를 폴란드에 확대 적용하였을 때 農務長官은 國民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도 혐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蘇聯과 穀物協定の 條件을 토의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파견된 首席代表는 國務省에 소속된 官吏였고 蘇聯과 거래하는 農産物貿易의 管理權限은 키신저에게 있다고 新聞은 보도하였다. 1975年末 農業者들은 버츠農務長官을 殉教者로 보고 農務省을 國務省이나 勞組의 희생자로 보기 시작하였다.

1975年初 白堊館의 政策決定機構는 세 関連그룹으로 구성되었다. 農務長官은 이 세 그룹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어느 그룹의 議長도 되지 못하였다.

農業者들은 農業政策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이 다른 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였다. AFB는 「國務省이 農産物販賣를 操作함으로써 農業者를 外交게임의 政治的人質로 이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NAWG는 蘇聯과 맺은 穀物協定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交渉担当者が 農業을 이해하고 自由市場 原則을 배웠더라면 農業과 일

반 국민을 위하여 좀 더 意義가 있는 協定을 체결했을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포드大統領은 이제 政府의 政策이 어떠한가를 결정하여야 할 때가 왔다. 大統領이나 그의 대부분의 幕僚들은 生産의 自由, 販賣의 自由, 輸出機會의 擴大에 대하여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키신저는 제한적인 商品協定, 국제적인 價格形成에 관한 規定, 備蓄, 食糧을 外交政策의 武器로 설명한다. 길은 둘로 갈라져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美国大豆協會(ASS)의 대변인인 빌 프리차드는 2월에 農業政策의 管理權限을 農務省에 돌려 줄 것을 요구한 14個州 4萬名の 農業者들의 請願書를 휴대하고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그는 政府의 市場介入으로 지난 2年동안에 60萬名の 大豆生産者들이 각각 평균 1萬1千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포드大統領은 1976年 3월에 食糧政策그룹을 改編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農業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試圖이었을 것이다. 大統領은 國務長官과 財務長官을 議長으로 앉힌 두 委員會를 代替하여 農業政策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議長에 農務長官을 임명하였다.

農業者들은 이 改編으로 고무되기는 하였지만 食糧과 油 문제에 대한 버츠農務長官의 자세에 전적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버츠長官은 美国 農業者에게 海外市場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世界問題에 대하여 美国이 취할 수 있는 選択, 즉 유력한 農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選択을 大統領은 무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食糧과 油와 石油과 油를 世界問題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要素라고 평가하고 美国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츠長官은 美国 農産物의 輸出供給 可能量을 農業者와 海外의 顧客에게 再保證하려고 試圖하였다. 그는 1976年 4월에 싱가포르에서 「美国은 輸出規制手段을 사용할 생각은 없으며, 1973年の 油種実과 同製品의 輸出제한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의도는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蘇聯과 체결한 協定은 특수한 狀況에 대한 対応策이므로 그와 비슷한 正式協定을 더 이상 체결할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農業指導者는 農業政策의 결정이 生産者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保證하기 위하여 협동하여야 하며, 또 作物生産을 통제하고 農産物의 輸出版

를 직접 다루기 위하여 공동행동을 일으키도록 農業者에게 촉구하였다. NFO의 올렌·리·스틸리는 1976年 1月 上院 農林業委員會의 海外農業政策 小委員會에서 행한 証言에서 農業者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하였다.

「國民이 食糧을 하나의 手段이나 또는 武器로 사용하고 싶으면 軍需品, 航空機나 기타 供給品과 마찬가지로 타당한 價格으로 食糧을 購入하고 또 萬人의 財産까지도 동원하여 國際政策을 수행하여야지 農業者의 生産物만을 사용하거나 農業者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2. 食糧과워의 外交的使用이 美國의 農業이나 農産物販賣 構造에

미치는 영향

美國의 對外政策手段으로 國內 食糧資源을 사용하는 것(앞으로 대대적으로 사용된다면)은 반드시 美國의 農業과 農産物販賣構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農産物販賣構造가 현재의 상태대로 있고 外交目的을 위하여 輸出制限 手段을 반복하여 사용하면 農業界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 염려가 있다. 美國에는 약 280萬의 農家가 있다. 이 가운데 약 50萬은 400萬달러 내지 그 이상의 年間 販賣高를 올리며, 美國이 販賣하는 食糧의 95%를 生産하고 있다. 나머지 230萬戶는 國內에서 販賣되는 食糧의 5%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大規模農場은 복잡한 사업을 경영하는 企業이며, 多額의 資本投入과 事前計劃이 필요하다. 그 資本費用의 대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그 生産物의 價格이나 需要는 심하게 변동하므로 그 企業의 収益性(그 存続可能性마저)은 중대한 위험을 받을 염려가 있다. 대부분의 大規模農場 經營者들은 平均價格이 다소 희생 되더라도 크게 변동하는 市場보다도 안정된 市場條件을 좋아한다. 美國의 食糧과워를 海外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염려가 있는 것은, 그 결과 생기는 價格이나 需要의 변동을 補償하는 메카니즘이 國內에 없는 한, 大規模農場 經營者에게 어떤 형태의 自衛行動을 취하게 하여 生産水準을 저하시키고 인프레를 악화시킬 것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대부분의 小農은 다른 生計手段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低價格이 여러 季節 계속되고 또 世界市場 接近이 멀어질 경우 그들의 純資産狀態는 악화되어 非農業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限界地

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中規模農場은 市場變動에 대처하여 한정된 期間內에 價格下落을 흡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이고, 또 대체로 借金의 보증이 될 自己資本을 충분히 가져 外交의 戰略으로 발생한 불리한 기간중에도 經營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政府가 國內의 影響을 완화하기 위한 새 法律을 제정하지 않고 外交目的을 위하여 輸出을 제한하게 되면 大農場과 小農은 財務上의 압력을 받고, 일부 土地所有者는 土地를 내놓지 않고서는 그 壓力을 면하지 못할 것 같다.

農產物 市場에 대한 조직적인 政府介入은 食糧을 外交目的에 사용한다는 일관된 國家政策의 필요한 要素이다. 政府資金에 의한 安定化計劃은 NFO의 올렌·리·스탈리가 1976年 1 月에 말한 基本的 要件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요컨대 政府가 공평한 生産者 價格으로 食糧을 購入하고 國際關係에서 食糧을 武器로 사용할 때에는 納稅者 전원이 資金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農業者는 國家가 食糧과위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費用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食糧의 外交의使用을 쉽게 하기 위하여 制度化되는 緩衝在庫計劃의 收益이 政府의 市場介入증대로 생길 非能率을 相殺하고도 플러스가 될지는 앞으로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다.

Ⅳ. 食糧輸出操作에 대하여 고려되는 諸政策

外交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이용하려면 穀物, 大豆의 輸出을 政府가 음으로 양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監督은 市場이 많고 民間穀物去來業者가 俳優의 역할을 맡는다면 外交政策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穀物이나 大豆의 輸出을 操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農產物輸出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機構와 規制의 정도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모든 輸出 過程의 規制, 數量配分, 價格決定, 出荷를 담당하는 國家貿易機關으로 부터 캐나다의 Wheat Board처럼 農業者의 受取價格을 결정하고 外國人 購買者와 數量과 價格을 교섭하지만 出荷는 民間請負業者에게 위임하는 機構, 아직 仮

정의 단계이지만 政治的, 經濟的基準에 따라 契約內容을 교섭하고 價格決定은 市場에 맡기되 交渉對象의 去來에 대해서는 民間供給業者와 荷主에게 競争入札을 인정해 주는 美國의 穀物, 大豆貿易機關에 이르기까지 여러형태의 機構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마지막 事例에서 볼 수 있는 市場介入의 程度는 國家貿易機關間에 체결되는 契約과 같이 특정 타입의 契約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것으로부터 액수가 큰 契約에 대한 일반적인 責任, 또 民間의 穀物去來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政策指導만을 하는 것까지 여러가지이다. 穀物과 大豆의 輸出規制를 계속할 政府貿易機關을 창설하는 한 방법으로 모든 農産物은 商務省의 輸出管理局에서 교부하는 認証許可書에 의하여 輸出하여야 한다는 勸告가 있었다. 이 勸告에는 既存의 民間流通 輸出会社는 모두 현행대로 활동을 계속하게 되든가 또는 미리 알려진 政治的 理由로 일부 許可書가 修正되거나 交付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협정된 價格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취지의 명확한 諒解事項이記入될 수도 있다.

外交上の 費用과 收益을 요약하기 전에 단일 全國穀物販賣機關(오레곤州 출신 위버下院議員이 第94議會에 제출한 HR8933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을 창설하려는 여러 提案이 포드政權은 물론 美國의 農業團體, 販賣組織, 穀物關係組織으로 부터 강력하고도 거의 일치된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같은 提案에 대한 反對論의 주요한 論拠는 現行制度가 훨씬 彈力性이 있고 能率的이라는 것과 理念上 政府의 市場介入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美國의 穀物과 大豆의 모든 輸出을 規制하기 위하여 單一機關이 창설되거나 어떤 방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그 外交上の 費用과 收益은 무엇인가. 方程式의 一邊인 收益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美國政府는 穀物, 大豆輸出의 規模나 時期를 감시·규제할 수 있으므로 72年の 對蘇穀物去來와 같은 「意外의 事態」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特定諸國은 海外 내지는 國際的인 자리에서 美國을 지지한데 대하여 價格이나 또는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代價를 받게 될 것이다.

(2) 穀物 또는 大豆의 왕성한 世界需要가 國內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계속적인 價格規制를 통하여 美國의 食糧資源에 대한 극단적인 요구를 規制할 수 있을 것이며, 또 1973年の 경우와 같은 大豆 輸出中止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穀物の 輸出水準을 조절하고 적당한 數量을 穀物備蓄에 돌리는 單一機關이 존재함으로써 穀物備蓄制度의 창설과 유지는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4) 国内에서 穀物 및 大豆의 輸出을 組織化시키는 制度는 美国의 貿易相對國의 制度에 더욱 비슷해질 것이다. 현재 몇몇 주요 競爭國에는 穀物 輸出을 규제하는 單一政府機關이 있다. 대부분의 주요 穀物輸入國(日本, 蘇聯, 中共,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諸國)은 각각 單一 國家機關을 통하여 去來를 하고 있다.

(5) 蘇聯과 같은 대량 購入國은 실제의 總必要量을 숨기고 巨額의 契約을 체결할 때는 두 販賣會社를 상대로 하여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漁夫之利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美国의 民間穀物會社는 그와같은 나라와의 去來에서 不利한 경험을 하였지만, 위와 같은 單一 機關이 있으면 그러한 不利益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6) 第3, 第4世界의 商品칼텔과 商品價格의 指數化要求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穀物貿易機關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方程式의 他邊인 費用은 다음과 같다.

(1) 그와같은 움직임은 貿易의 自由化와 農產物市場에 대한 政府介入의 축소를 지지하는 聯邦政府의 政策에 상반될 것이다.

(2) 대부분의 先進市場經濟國에 단일政府貿易機關이 창설되면 穀物과 大豆의 貿易이 현재보다도 더 政治手段으로 사용되기 쉬워 美国과 EC間의 農產物 貿易紛爭과 같은 것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穀物貿易機關만이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農務省이 관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紛爭이 생길 경우 현재는 民間穀物去來業者가 우선 中間의인 立場에서 행동할 수 있지만 단일 販賣機關이 있을 때에는 政府間의 紛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4) 그와같은 機關의 존재는 美国의 穀物 大豆輸出의 규제가 사실 이상으로 효과적이고 유력한 道具라는 것을 시사할지도 모른다. 즉 政策決定者는 실행할 수 있는 것보다도 빈번하게, 또 보다 큰 目的을 위하여 農產物輸出의 規制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5) 單一 市場 機關이 商業的인 고려이외의 基準을 채용하면 그것은

GATT 第17条(1)(b)項에 직접 저촉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이미 대부분의 第4世界諸国과 일부 第3世界諸国은 公法 第480号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農産物 輸入計劃을 美国政府機關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에게는 國際開發處, 美農務省과의 去來를 단일 穀物去來機關과의 去來로 바꾸어도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去來는 여전히 市場밖에서 이루어지고 의존관계가 존속될 뿐만 아니라 美国의 法定條件과 기타 필요한 條件이 계속 적용되므로 食糧의 供給 및 數量分配에 대해서는 政治的 決定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美国의 商業輸出에 전면적으로 의존해 왔거나 公法 第480号에 의거한 援助를 어느 정도 받아 온 第3世界諸国の 경우는 貿易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그와같은 나라들은 캐나다, 濠州, 아르헨티나로 부터 穀物을 입수하지 못하는한 어떤 條件이 설정되더라도 그 條件을 준수할 의무를 면치 못할 것이다.

先進諸国の 경우에는 단일 穀物貿易機關으로 바뀌면 貿易關係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나라들은 競争壓力으로 확립되는 價格으로 民間經路를 통하여 穀物을 購入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와같은 契約当事者間에 政府機關을 개재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運當패턴으로부터의 離脫을 의미한다. 다른 輸出諸国도 그러한 機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輸入国은 그러한 방식에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美国이 관련된데서는 그러한 방식이 새로운 일련의 商業關係의 확립을 의미하게 된다. 競争輸出国에게 이와 똑같은 변화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短期的으로는 그러한 나라들에게는 貿易上의 일부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長期的으로 볼 경우에는 그 效果가 美国의 政府機關이 自国産 農産物의 販賣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穀物과 大豆의 단일 貿易機關이 설립되면 美国 國內의 價格과 生産에 최대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이 때 意思決定過程은 國內의 政治적, 경제적 고려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며 對外政策上의 要件은 그 過程의 한 要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輸出管理法 해설

第2次世界大戰 이후 農産物 輸出貿易을 규제해 온 주요한 法律은 현재 輸出管理法으로 알려진 法律이다. 최초의 1949年法(公法 第81~110号)은 供給이 부족할 때와 國民의 安全보장목적을 위하여 輸出規制權限을 大統領에게 부여한 戰時立法을 개정한 法律이었다. 1949年 法에는 일부 原料가 国内外에서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어 그 原料를 美國에서 輸出하면 國內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議會의 結論이 붙어있다.

1949年法 第2条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國內經濟로부터 최소한 資源의 지나친 流出을 방지하고 海外的 異常需要로 인한 인프레效果를 輕減하기 위하여, (b)美國의 對外政策을 촉진하고 國際의 義務遂行을 지원하기 위하여, (c)國家의 安全保障에 대한 意義라는 觀點에서 輸出에 대하여 필요한 境界를 재울리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輸出을 規制하는 것이 美國의 政策이다.」

本法 第3条는 이와같은 政策을 수행하기 위한 權限을 大統領에게 부여하였다. 大統領에게는 「그가 명령하는 規則이나 規制에 의거하여」 輸出을 금지하거나 削減하고 또는 該當 行政官에게 그와같은 權限을 위임할 權限이 부여되었다.

第3条(c)는 農産物에 대한 大統領의 權限行使를 특히 제한하고 있다.

「(c)本条項이 부여한 權限은 農務長官이 油脂를 포함한 어떠한 農産物에 대해서도 農産物의 供給이 國內經濟의 需要를 계속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期間中에는 行使할 수 없다. 다만 第2条(b) 또는 (c)項에 규정된 政策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규제하여야 할 産品과 規制의 정도를 결정할 때 그 担当官은 美國의 對外政策 및 措置가운데 輸出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관장하는 省이나 독립된 政府機關의 助言이나 情報을 얻어야 한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輸出을 인정할 경우에 担当官은 「生産者, 既存 및 신규 輸出業者, 소규모 輸出商人의 이익도 고려하여」民間의 競争의 販賣経路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장려하기로 되어있었다.

1948年法은 대폭 수정됨이 없이 1951年, 53年, 56年, 58年, 60年에 연장되었다.

1962年에 개정된 法律(公法第87~515号)에는 第2, 第3条에 새로운 原料生産物이 추가되었다. 또 第2条에 추가된 政策宣言에는 美国과 防衛条約을 체결한 모든 나라와 협동하여 輸出規制를 행하고 美国의 國家安全保障, 對外政策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非共產諸國이 共產諸國과 去來할 때 준수하여야 할 統一政策을 세우는 것이 美国의 政策이라고 되어있다. 개정된 第3条(a)에 의거하여 大統領이 美国의 國家安全保障을 위협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美国의 輸出이 當該國의 군사적, 경제적 잠재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美国에 害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와같은 輸出要請은 거부된다고 규정되었다.

1949年法の 1965年 개정(公法 第89~63号)에는 第2条에 다음과 같은 第4節이 추가되었다.

「(4) 議會는 또 (A) 美国의 友好國에 대하여 다른 여러나라가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貿易制限 또는 보이코트에 반대하고, (B) 美国의 友好國에 대하여 기타 海外諸國이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貿易制限이나 또는 보이코트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효과가 있는 情報의 제공이나 協定의 체결을 비롯한 모든 措置를 物品, 原料, 資材 또는 情報의 輸出에 종사하는 國內企業에 거부하도록 장려하고, 요구하는 것이 美国의 政策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1969年에는 새로운 輸出管理法(公法 第91~184号)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는 旧法에 포함된 기본적인 政策이 더욱 상세히 열거되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議會의 네가지 結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國內과 諸外國의 일부 原料供給 可能量은 서로 다르므로 美国의 輸出構成, 數量 및 配分이 國內經濟와 美国의 對外政策 目的을 완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2) 무제한 한 輸出은 美国의 國家安全保障에 나쁜 영향을 미칠는지도 모른다. (3) 美国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輸出制限은 國際收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4) 특정 產品에 관한 輸出政策의 不確定性은 그 產品을 다루는 美国業界의 노력을 저해하고 美国의 國際收支를 약화시켰다.

本法 第3条에서 議會는 美国의 政策을 다음과 같이 다섯 분야로 나누어 선언하였다.

「第3条, 議회는 다음과 같이 宣言한다.

(一). (A) 美国과 外交關係나 또는 貿易關係를 맺은 모든 나라와의 貿易을 장려하고 (다만 그와같은 貿易이 國家利益에 배치된다고 大統領이 결정한 諸國은 제외), (B) 美国의 國家安全保障을 해치게 될 다른 나라나 또는 여러 나라의 軍事潜在力에 상당히 기여할 財貨나 技術의 輸出을 제한하는 것이 美国의 政策이다.

(二). (A) 国内經濟로부터 稀少資源의 지나친 流出을 막고 비정상적인 海外要需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影響을 줄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B) 美国의 對外政策을 더욱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國際的義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C) 美国의 國家安全保障에 대한 중요도라는 관점에서 輸出에 대하여 필요한 경계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輸出規制를 하는 것이 美国의 政策이다.

(三). (A) 美国이 防衛協定을 체결한 모든 나라와 협동으로 필요한 輸出規制 措置를 定式化, 再定式化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실시하고, (B) 모든 協定締結國이 준수하여야 할 統一貿易規制政策을 수립하는 것이 美国의 政策이다.

(四). 國家의 安全保障과 對外政策目的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国内經濟의 건전한 성장이나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國家의 經濟的 資源이나 貿易潜在力을 활용하는 것이 美国의 政策이다.

(五). (A) 美国의 友好國에 대하여 다른 여러 外國이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貿易制限이나 또는 보이코트에 반대하고, (B) 美国의 友好國에 대하여 다른 여러 外國이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貿易制限이나 보이코트를 촉진, 지지하는 효과가 있는 情報提供 또는 協定締結을 비롯한 措置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物品, 原料, 資材 또는 情報의 輸出에 종사하는 企業에 장려하고 요청하는 것이 美国의 政策이다.」

1969年法の 改正으로 貿易政策의 실시, 再檢討, 報告의 義務가 商務長官에게 부과되는 동시에 輸出에 관한 規則이나 規制를 결정하는 大統領의 權限도 규정되었다. 第4条(f)에서는 農産物에 대한 輸出規制 措置의 適用制限이 다음과 같이 반복 규정되었다.

「(f) 本条의 權限은 本法 第3条, 第2節(B) 또는 (C)項에 적힌 政策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油脂를 포함하는 農産物의 供給이

国内經濟의 필요를 초과한다고 農務長官이 결정한 기간중에는 그 農産物에 적용되지 않는다.」

1969年法の 第5条에는 輸出規制 措置를 확립하기 이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시 규정되고 認可된 輸出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民間의 貿易経路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도 장려하고 있다. 다른 여러 条項에는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실시할 의무가 있는 節次 및 報告義務등이 규정되어 있다.

1969年法은 1971년에 연장되고 1972년에 개정된 다음 輸出機會均等法 (Equal Export Opportunities Act, Public Law 92-412)이 되었다. 1972年の 改正에서는 政策宣言으로 어떤 産品을 輸出規制의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聯邦政府機關과 民間部門의 유능한 전문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改正法은 (1)規制의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輸出規制를 심의하도록 商務長官에게 요구하고, (2)일방적인 輸出規制를 폐지하는 권한을 大統領에게 부여하며, (3)議會에 대한 行政府当局의 추가 보고를 요구하였다.

大豆, 綿実 및 同製品에 대하여 1973年 6월에 실시한 禁輸措置는 1969年 輸出管理法에 규정된 法の權限에 의거한 것이다. 禁輸를 단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商務長官이던 프레데릭 덴트는 1969年法 第3条(2)(A)項에서 요구된 條件이 충족되었다고 밝히고 農務長官의 승인하에 禁輸가 단행되었다.

1969年法은 1974年 6月 30일에 失效될 예정이었으나 公法 第93-372号로 失效時日이 1974年 9月 30일까지 연기되고 그 동안에 실질적인 改正討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4年 10月 29일까지 改正法이 성립되지 못하여 政府는 9月 30일부터 10月 29일까지 對敵國貿易法과 같은 항구적인 「國家緊急」立法에 의거하여 긴급적인 輸出規制權限을 행사하였다.

1974年 改正法(公法 第93-500号)은 輸出管理法을 1976年 9月 30일까지 연장하고 1969年法에 약간의 실질적인 變更을 가하였다. 同法 第2条에 明記된 議會의 네 결론에 다음 条項이 추가되었다.

「(5) 世界의 供給에 대한 액세스(access)의 부당한 제한은 세계의 政治적,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자유로운 國際貿易을 방해하며 여러나

라의 成長이나 開發을 지체시킨다.」

第3條의 政策宣言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點이 수정되었다. 첫째는 第3條 (2)(A)에서 「비정상(어브노말)」이라는 말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어떤 水準에서이든 海外需要가 稀少原料의 지나친 流出과 심각한 國內인프레를 초래할 경우에는 輸出規制措置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7)項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은 輸出規制措置의 실시에 관한 追加政策이 선언되었다.

「(7) 供給에 대한 外國의 액세스制限이 현재 國內인프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國內의 심각한 供給不足을 가져오거나 가져 올 염려가 있고 美國의 對外政策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가해진 경우 그와같은 制限의 제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輸出許可 手數料를 포함한 輸出規制 手段을 사용하는 것이 美國의 政策이다. 이 政策을 실시함에 있어서 大統領은 그런 原料의 美國으로부터의 輸出에 規制를 가하기 이전에 國際協定이나 國際協定을 통하여 그와같은 制限, 政策 또는 措置의 철폐, 輕減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타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本節에 규정된 政策을 수행하기 위한 措置는 医薬品, 또는 醫療資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4條도 추가로 改正되어 國內에서 事業經營을 영위하는 자는 누구든지 輸出規制의 결과로 생기는 독특한 곤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規制의 免除를 요구할 수 있는 節次가 정해졌다. 비싼 價格으로 판매하고 싶은 希望은 독특한 곤난의 証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宣言되었다.

또 第5, 10條에 규정된 監視, 報告節次에 관해서도 개정이 되었다. 第10條에 의거한 每4半期에 議會에 제출하는 報告에는 앞으로 (1) 輸出管理法에 의거한 監視對象產品의 供給不足 또는 價格上昇에 따르는 國民經濟나 世界貿易에 대한 영향, (2) 그 產品의 世界需給事情, (3) 그와같은 供給不足 또는 價格上昇에 대하여 다른 여러나라가 취하는 措置와 이상에 대한 商務長官의 분석을 포함하게 되었다.

1973年の 大豆禁輸 이후 監視와 최소한도의 許可制, 輸出報告 이외의 目的으로 輸出管理法이 발동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이 權限이 있기 때문에 美國의 穀物貿易商社는 1974年の 任意事前 承認制와 1975年の 對蘇·폴랜드 穀物販賣 中止措置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農

業団体, 특히 NAWG는 1975년의 任意販売 中止가 개정 1969年法の 条項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國務省은 販売中止와 美·蘇穀物協定の 適法性에 관한 議會審議에 호응하여 法的인 覺書와 구체적인 質問에 대한 回答書를 제출하였다. 1975년의 政府措置의 法的權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國務省은 다음과 같이 回答하였다.

「輸出管理法에는 国内에서 輸出規制를 할 수 있는 大統領의 基本的權限이 규정되어 있다고 國務省은 생각하고 있다. 大統領은 国内法の 適用事項으로 輸出規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輸出管理法이나 다른 일부의 權限付 与法 또는 条約의 条項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輸出管理法은 언제 어떤 產品에 대해서도 輸出規制의 실시를 大統領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穀物協定이나 각종의 非公式要請과 協定을 비롯한 措置(輸出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지만 憲法 또는 法律上 독립적인 權限을 가지는)을 취할 大統領의 權限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그와같은 措置가 輸出管理法을 준수하지 않고는 시행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措置나 또는 權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穀物協定과 그 1969年法の 관계에 대한 國務省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議會는 1969年輸出管理法(改正 50 USC, APP·2401~2413)에서 美国으로부터의 輸出을 규제하는 매우 광범위한 權限을 大統領에게 부여하였다. 農産物에 관하여 議會는 第4条(f)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하였다. 大統領은 供給이 극단적으로 부족할 경우나 또는 美国의 對外政策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그 國際的義務를 수행하며 國家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하여 輸出規制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輸出規制 措置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여야 할 義務는 없다.

議會는 일반적인 對外政策에 의거하여 輸出規制를 결정할 완전한 自由裁量權을 大統領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對蘇 穀物協定 第2条의 규정대로 美国의 穀物供給量이 특정 限界이하로 줄지 않은 期間중에 既定數量의 輸出을 규제하는 例의 自由裁量權을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은 憲法이 부여한 大統領의 權限의 범위안에 있다. 이 約束은 輸出管理法 第3条 및 第4条(f)에 언급된 政策과 모순되지 않는다. 더우기 이 保証은 蘇聯이 購入約束을 하게 만드는데 필요하였으므로 農産物販賣法の 目的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

前記 協定 第9條의 規定은 輸出管理法의 節次上의 要件을 무시한 사실상의 輸出規制를 구성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對蘇穀物協定은 분명히 輸出管理法의 對外政策基準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大統領은 輸出規制가 國家利益에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同法에 기초를 둔 權限에 의거할 수 있고 장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위의 協定 그 자체는 美國穀物の 輸出을 제한하지도 않고 또 美國의 國內法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는 輸出規制를 확립하는 것도 아니다.」

1974년에 개정된 1969年 輸出管理法은 1976年 6月30일에 실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上下兩院은 第94議會의 휴회전에 연장법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休會前까지 上院의 會議出席議員이 임명되지 않아 兩法案은 폐기되고 말았다. 이 延長法案의 두 規定은 本研究와 관련이 있다.

延長法案의 첫째 關係規定은 同法 第4條(f)의 헛드레스턴 改正이었다. 이 改正에 의하면 大統領이 輸出規制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도 議會가 規制提議에 대하여 일치된 否決決議를 채택할 수 있는 期間인 30日이 經過할 때까지는 對外政策을 이유로 農産物에 대하여 輸出規制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上院의 口頭표결로 S3084에 추가된 改正에는 供給不足이나 또는 國家安全保障을 이유로 하는 輸出規制에 대한 議會의 否決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다. 헛드레스턴改正은 H·R·15377이 개정되는 같은 기간에 下院 國際關係委員會에 제안되었다.

둘째로, 종전과 같은 여러 條項(S. 3084의 108, H. R. 15377의 16)은 購入者가 다음과 같은 事項에 대하여 충분히 保證을 하는 條件으로 外國에서 消費되기 위하여 購入되거나 또는 輸出用으로 美國에 저장되는 農産物에 대해서는 그후 供給이 不足해졌을 때에도 輸出規制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農務長官과 협의하여 保證하는 權限을 商務長官에게 부여하였다. 앞에서 말한 購入者의 保證이란 (1) 當該 農産物은 결국 輸入될 것, (2) 當該 農産物의 판매나 수출로 稀少原料의 지나친 流出을 초래하지 않고 國內의 인플레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3) 當該農産物을 美國에 저장함으로써 國內所有農産物의 저장에 이용할 倉庫의 공간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4) 國內保管의 목적은 후일에 사용하기 위한 予備在庫를 확립하는 것이지 第3國에 대한 再販賣는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와같은 규정을 제정한 의도는 外國의 購入者에게 그들이 購入하고 代金을 지

불한 農産物이 購入后 数量規制의 対象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美国産 農産物의 予備供給량을 外国購入者들로 하여금 購買하도록 촉진하는데 있다.

註1) 輸出管理法 풀이 参照.

2) 輸出管理法 풀이 参照.

3) 蘇聯은 한때 長期協定을 요구하였고 美国은 國內의 압력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을 때에만 동의하였다는 証拠가 있다.

4) 日本의 農林大臣이 1975年 8月 美国을 방문하였을 때 버즈 農務長官은 美国이 앞으로 3年마다 每年 적어도 1,400萬t의 大豆 및 穀物을 供給한다는 諒解가 兩國間에 성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400萬t의 內訳은 飼料穀物이 800萬t, 小麦이 300萬t, 大豆가 300萬t이다. 日本은 가능한 한 이 商品을 구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Diebold William, Jr., *Trade Policies Since World War II*, *Current History*, June 1962, p. 357.

6) Jackson, John H.,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New York, Bobbs-Merrill Co. (1969), p. 735.

7) Dam, Kenneth W., *The GAT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 256.

附表 1) 小麦: 世界の輸出과 特定輸出国の比率^b, 1951~76年(會計年度)

會計年度	美		国		外		加		洲		亞		蘇		聯		西		歐		東		歐		其		他		世界輸出 (100万t)	世界生産 (100万t)	輸出比 (%)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00万t	比率%				
1951	99	35	78	27	39	13	28	10	16	50	1.1	4	0.5	10	0.4	10	0.3	282	1.0	...	...	...	...	...	...	...	...	...	...	...	...	...
52	129	44	94	32	32	10	08	18	50	7.0	0.8	0.4	0.5	23	0.3	10	0.3	290	1.0	...	...	...	...	...	...	...	...	...	...	...	...	...
53	266	32	196	33	27	10	07	19	60	08	0.8	0.4	0.5	07	0.7	10	0.7	267	2.0	...	...	...	...	...	...	...	...	...	...	...	...	...
54	38	24	26	9	17	9	35	13	50	18	2.7	0.6	0.6	1.9	0.7	20	1.7	244	7.0	...	...	...	...	...	...	...	...	...	...	...	...	...
55	74	27	68	25	23	9	35	13	50	2.7	0.6	0.6	0.6	1.9	0.7	20	1.7	273	7.0	...	...	...	...	...	...	...	...	...	...	...	...	...
56	94	30	78	25	28	9	31	10	19	60	3.4	0.4	0.4	1.4	0.9	10	0.9	304	4.0	...	...	...	...	...	...	...	...	...	...	...	...	...
57	149	43	74	21	34	9	26	7	43	17	4.1	0.4	0.4	0.9	0.9	0.9	0.9	347	2.0	...	...	...	...	...	...	...	...	...	...	...	...	...
58	109	33	81	25	16	5	21	6	30	130	4.1	0.1	0.1	0.9	0.9	0.9	0.9	324	3.0	...	...	...	...	...	...	...	...	...	...	...	...	...
59	120	33	77	22	20	5	21	5	57	150	3.4	0.2	0.2	1.0	0.8	10	0.8	350	2.0	...	...	...	...	...	...	...	...	...	...	...	...	...
60	138	37	81	20	31	8	21	5	61	150	3.4	0.5	0.5	1.0	0.8	10	0.8	372	2.0	...	...	...	...	...	...	...	...	...	...	...	...	...
61	179	41	93	21	49	11	19	4	50	110	2.8	0.6	0.6	1.0	0.3	10	0.3	430	0.7	...	...	...	...	...	...	...	...	...	...	...	...	...
62	196	40	99	20	62	12	23	4	53	120	3.8	0.4	0.4	0.9	0.7	10	0.7	483	0.9	...	...	...	...	...	...	...	...	...	...	...	...	...
63	173	38	90	20	47	10	18	4	57	120	4.6	0.3	0.3	0.9	0.7	10	0.7	444	1.0	...	...	...	...	...	...	...	...	...	...	...	...	...
64	231	40	150	22	77	13	27	4	21	40	4.7	0.3	0.3	0.9	0.9	10	0.9	573	1.0	...	...	...	...	...	...	...	...	...	...	...	...	...
65	193	36	118	22	64	12	42	4	21	40	6.8	0.3	0.3	1.1	1.1	10	1.1	524	2.0	...	...	...	...	...	...	...	...	...	...	...	...	...
66	233	36	148	23	56	8	78	12	26	40	6.8	0.8	0.8	1.1	1.1	10	1.1	633	1.0	...	...	...	...	...	...	...	...	...	...	...	...	...
67	193	34	189	25	99	12	31	5	43	90	5.8	1.0	1.0	0.6	0.6	10	0.6	574	1.0	...	...	...	...	...	...	...	...	...	...	...	...	...
68	201	29	87	17	70	13	13	3	58	110	7.7	0.3	0.3	0.6	0.6	10	0.6	535	1.0	...	...	...	...	...	...	...	...	...	...	...	...	...
69	146	29	87	16	53	13	27	3	58	110	9.2	0.2	0.2	0.6	0.6	10	0.6	492	1.0	...	...	...	...	...	...	...	...	...	...	...	...	...
70	164	30	89	16	73	13	20	3	64	110	11.1	1.2	1.2	0.7	0.7	10	0.7	545	1.0	...	...	...	...	...	...	...	...	...	...	...	...	...
71	198	38	126	27	95	16	16	2	72	120	6.4	0.8	0.8	0.3	0.3	10	0.3	585	0.6	...	...	...	...	...	...	...	...	...	...	...	...	...
72	169	33	158	21	86	14	13	2	58	90	8.7	0.6	0.6	0.6	0.6	10	0.6	574	1.0	...	...	...	...	...	...	...	...	...	...	...	...	...
73	317	43	156	21	54	7	35	4	13	10	120	0.9	0.9	1.9	1.9	10	1.9	724	2.0	...	...	...	...	...	...	...	...	...	...	...	...	...
74	311	45	115	16	54	7	11	1	50	70	123	1.7	1.7	0.7	0.7	10	0.7	680	1.0	...	...	...	...	...	...	...	...	...	...	...	...	...
75	280	40	112	16	82	11	22	1	40	50	130	1.7	1.7	0.3	0.3	10	0.3	686	0.4	...	...	...	...	...	...	...	...	...	...	...	...	...
76 ^c	324	44	125	17	88	12	38	5	05	06	129	0.8	0.8	0.5	0.5	10	0.5	722	0.6	...	...	...	...	...	...	...	...	...	...	...	...	...

註: a. 小麦粉을 包含.
b. 端數整理로 合計가 100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c. 暫定.

資料: World Grain Trade Statistics, USDA, FAS M-258 September 1974: World Grain Situation: Review and Outlook, USDA, FG 6-76, April 1976; Production Figures, USDA: World Grain Situation: Review plus Outlook,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FG 6-76, April 1976, p. 25. USDA, FG 6-76, April 1976.

附表 2) 미국의小麦·小麦粉輸出 : 主要國・地域別 및 그것이 全小麦·小麦粉輸入에 차지하는 比率^a, 會計年度

	1966 年		1967 年		1968 年		1969 年		1970 年		1971 年		1972 年		1973 年		1974 年		1975 年		1976 年 ^b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數量	比率 (%)
西 메	1	14	4,100	...	...	...	3	100	3	6	4	80	402	98	550	100	705	89	832	100	150	100
브	848	36	1,142	43	2,047	67	771	32	945	45	768	42	498	30	1,166	39	1,560	63	662	33	2,807	70
칠	211	67	591	9	56	12	38	10	29	14	151	32	1	1	536	1	613	54	550	72	598	74
레	214	42	550	100	260	41	113	20	166	26	199	30	458	70	625	66	616	69	616	69	600	70
네	375	61	453	76	611	87	685	88	699	92	441	74	3,276	81	625	95	575	95	499	92	510	78
비	2,598	67	3,140	15	3,362	16	2,771	18	2,996	18	2,919	14	3,276	19	4,348	13	5,369	18	4,530	16	NA	...
유럽	512	26	504	28	453	24	442	17	316	17	631	26	215	7	250	8	328	15	328	22	400	25
중	368	46	400	48	290	30	286	22	288	17	421	42	558	40	771	39	488	32	635	36	600	36
남	547	11	577	13	238	5	123	2	323	6	1,169	21	522	13	843	18	402	13	203	6	800	20
아	2,787	62	2,352	12	1,839	9	2,058	13	1,783	10	3,356	16	1,779	10	3,022	19	2,478	...	2,158	7	NA	...
서	625	14	384	13	1,73	9	2,058	13	426	13	3,356	16	408	...	3,022	...	2,478	...	2,158	...	NA	...
북	3,409	14	2,736	13	2,002	9	2,273	15	2,209	13	4,090	20	2,187	12	3,531	11	3,152	10	2,576	9	NA	...
아	26	1	153	9	41	1	14	1	10	1	875	4	34	...	123	4	273	15	52	3	1,000	50
아	1,563	6	477	2	326	1	287	...	10	...	4,965	...	2,221	...	1,764	...	4,003	...	2,700	...	NA	...
아	4,972	...	3,213	...	2,328	...	...	...	2,219	...	4,965	...	2,221	...	1,764	...	4,003	...	2,700	...	NA	...
아	...	...	...	...	...	...	...	...	...	...	...	...	...	...	3,468	63	4,725	61	978	39	4,500	42
아	...	...	...	...	...	...	...	...	...	...	...	...	...	...	979	44	505	31	442	21	800	48
아	7,137	93	4,528	68	5,628	86	2,303	60	2,539	83	1,391	60	932	57	502	37	1,960	56	1,490	25	800	48
아	1,285	100	2,203	72	2,258	56	1,824	43	2,277	51	2,940	60	2,139	43	3,397	68	3,054	57	3,332	67	4,500	69
아	527	57	1,097	83	2,079	89	968	86	1,629	97	1,701	90	1,421	79	1,621	81	3,054	57	3,332	67	4,500	69
아	968	78	1,097	83	2,079	89	968	86	1,629	97	1,701	90	1,421	79	1,621	81	3,054	57	3,332	67	4,500	69
아	372	96	240	90	400	98	371	64	580	100	374	83	947	92	1,122	82	536	53	826	54	1,600	100
아	419	16	16	6	38	84	304	55	682	77	528	93	313	57	498	31	664	94	544	86	475	86
아	13,022	56	10,228	51	13,380	65	8,821	60	10,168	61	10,401	52	9,422	56	11,376	35	15,040	48	17,169	61	NA	...
아	314	73	753	80	257	38	243	34	176	64	251	38	455	51	408	63	1,045	65	717	47	900	60
아	1,256	61	1,275	51	632	1	...	...	203	79	...	...	...	...	292	57	1,045	65	717	47	900	60
아	117	49	586	57	153	6	153	57	203	79	553	85	498	76	265	57	1,045	65	717	47	900	60
아	2,438	11	3,030	16	632	6	839	66	1,127	7	1,604	81	1,885	11	1,789	5	3,374	55	575	29	4,400	29
아	...	...	...	...	...	...	...	...	...	...	...	...	...	...	...	...	...	...	...	...	NA	...
아	23,033	...	19,614	...	20,352	...	14,721	...	16,452	...	19,893	...	16,869	...	31,749	...	31,016	...	28027	...	32,400	...

註: a. 資料는 個國의 國家에 對해서는 Reference Tables on Wheat, Corn, and Total Coarse Grains Supply-Distribution for Individual Countries, USDA,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FG 7-76 May 1976이고, 個國의 合計와 그것에 對한 美國의 輸出比率는 美國으로부터의 小麦, 飼料 穀物의 入手 對 關한 輸入國의 統計에 의거하였다. 地域總計는 當該地域에 對한 美國의 輸出資料와 地域合計에 차지하는 美國의 輸出比率에 對한 美國의 統計에 의거하였다. 船舶으로 인한 時間差, 報告期間의 차이와 不充分한 貿易統計로 地域合計는 同一期間의 個國의 合計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表에 對한 誤差 源의 個國의 數字도 대략적인 數值에 불과 하지만 本研究의 目的에서 보면 그 數值도 政策上의 結論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主要 消費國에 對한 全 資料를 제시할 정도로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本表에는 年間 50萬 t 이상의 小麦 또는 飼料穀物을 구입한 나라만이 포함되어 있다.

b. 暫定.

(単位: 100 万 t)

附表 3) 飼料穀物^a: 世界の輸出高과 그에 차지하는 特定輸出国의 比率^b, 1951 ~ 76 會計年度

會計年度	美 国		加 拿 大		澳 洲		아르헨티나		蘇 聯		西 欧		東 欧		其 他		世界輸出合計	世界生産量 ^c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1951	56	48	06	5	06	5.0	15	13.0	02	2	02	2	02	2	08	17	11.7	...
52	44	31	23	16	1.0	4.0	06	12.0	03	2	03	1	07	3	28	20	14.0	...
53	41	28	37	26	0.7	5.0	09	19.0	05	4	04	1	04	3	23	16	14.4	...
54	32	22	34	23	0.7	5.0	18	6.0	05	3	05	3	06	4	22	15	14.7	...
55	38	27	20	14	0.5	3.0	04	2.0	05	4	05	4	08	4	32	23	14.1	...
56	74	43	15	9	06	4.0	12	7.0	1.0	6	1.0	6	07	4	7	16	16.8	...
57	58	32	20	11	07	4.0	12	7.0	2.1	12	2.1	7	06	3	29	16	17.9	...
58	79	40	20	10	04	2.0	22	6.0	1.4	17	1.4	7	1.1	5	32	16	19.9	...
59	104	49	1.5	7	1.0	3.0	27	4.0	0.7	3	0.7	3	0.9	4	26	12	21.1	...
60	11.1	49	1.4	6	0.8	3.0	3.9	1.0	1.4	6	1.4	6	1.0	4	23	10	22.5	...
61	10.7	47	0.8	3	1.1	4.0	10	5.0	2.3	10	2.3	10	1.3	5	27	12	22.7	457
62	14.1	46	0.9	3	1.1	3.0	11	6.0	3.4	11	3.4	11	1.4	4	40	13	30.7	440
63	14.9	50	0.5	3	0.6	2.0	10	4.0	2.6	11	2.6	11	1.2	4	51	17	29.8	461
64	15.7	45	1.1	3	0.7	2.0	12	3.0	4.4	12	4.4	12	1.2	4	60	17	34.6	470
65	17.6	48	0.9	2	0.7	2.0	13	3.0	4.8	13	4.8	13	1.3	3	44	12	36.4	475
66	25.2	56	0.9	2	0.4	1.0	8	5.0	5.6	12	5.6	12	1.4	2	53	11	44.7	488
67	20.8	48	1.0	2	0.8	2.0	15	1.0	6.3	14	6.3	14	1.4	4	79	18	42.8	521
68	19.6	46	1.1	2	0.3	0.8	9	1.0	8.0	15	8.0	15	1.8	4	79	18	42.8	521
69	15.9	38	0.8	1	0.8	2.0	13	2.0	8.5	19	8.5	19	1.3	3	53	19	41.0	545
70	19.2	44	1.2	2	0.9	2.0	13	0.8	8.5	19	8.5	19	1.1	2	53	12	43.4	548
71	19.3	38	3.9	7	2.2	4.0	15	0.9	8.5	16	8.5	16	1.4	2	64	12	50.6	574
72	20.7	38	4.0	8	3.2	5.0	11	0.6	10.3	20	10.3	20	0.5	1	72	13	54.4	826
73	35.4	56	4.3	6	1.6	2.0	16	0.2	13.7	25	13.7	25	1.2	1	64	10	64.0	809
74	43.6	56	2.7	3	1.9	2.0	10	0.9	13.7	17	13.7	17	2.0	1	84	15	77.6	865
75	34.2	56	2.6	3	2.9	4.0	12	1.0	11.2	16	11.2	16	1.1	1	84	12	69.9	826
76 ^d	45.2	55	4.2	5	3.1	3.0	6	0.0	12.0	14	12.0	14	3.1	3	88	10	81.9	638

註: a. 萬수, 大英, 西트.
b. 端數정리로 比率을 合計해도 100이 되지 않는다.
c. 라이베리아 및 베트남 포함.
d. 暫定.

資料: World Grain Trade Statistics, USDA, FAS M-258 September 1974; World Grain Situation: Review and Outlook, USDA, FG 6-76, April 1976; 生産高는, USDA, World Grain Situation: Review and Outlook,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FG 6-76, April 1976, p. 26.

(單位：千噸)

附表 4) 美国의 飼料穀物輸出 : 主要国・地域別, 및 그것이 全飼料穀物輸入에 차지하는 比率^a, 會計年度

	1966年		1967年		1968年		1969年		1970年		1971年		1972年		1973年		1974年		1975年		1976年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数量	比率(%)
西半球	551	100	485	100	788	100	799	100	667	100	288	100	220	100	715	100	1,215	100	1,071	100	524	100
北美	141	69	76	89	113	99	49	94	406	95	195	34	110	93	645	73	1,813	94	2,210	79	1,515	64
中南	947	63	753	54	1,300	69	1,198	55	1,556	67	1,137	43	1,125	57	3,001	73	4,490	69	4,212	61	NA	...
西E	1,576	72	1,302	50	761	34	452	21	761	31	988	32	332	12	283	11	368	11	716	21	2,750	96
C	1,692	41	1,458	30	1,704	31	1,360	27	1,328	23	1,219	36	2,174	38	2,110	43	2,956	54	2,557	42	2,550	49
西B	2,975	34	1,647	26	1,038	23	1,702	20	1,418	20	1,240	20	1,418	24	2,474	44	2,504	37	2,306	40	2,057	38
C	2,577	81	2,274	76	2,241	71	1,373	59	1,763	63	2,158	61	1,176	44	2,159	65	3,306	61	4,974	79	4,625	73
E	2,518	58	1,924	46	1,824	45	1,748	43	1,841	43	1,507	36	1,472	37	1,880	44	1,444	32	1,768	45	1,700	33
其他	13,753	59	9,177	41	1,891	46	7,891	39	7,428	38	8,316	34	8,222	37	10,957	50	12,322	46	11,313	46	17,000	...
其他	329	100	136	48	188	94	289	100	373	84	191	100	208	93	419	100	1,022	94	646	89	835	94
其他	85	34	162	55	126	40	63	15	92	24	160	35	437	52	580	54	518	48	1,177	83	1,276	81
其他	1,946	64	922	28	1,078	39	237	10	916	38	214	8	293	11	2,200	76	2,806	67	2,627	59	2,525	58
其他	2,882	...	1,445	...	1,540	...	599	...	1,504	...	810	...	1,243	...	3,271	...	4,591	...	4,982	...	NA	...
其他	16,635	58	10,622	38	11,431	43	8,490	34	8,932	27	9,126	31	9,465	35	14,238	51	16,923	48	16,295	49	NA	...
其他	27	2	305	53	270	31	330	30	138	9	263	30	335	16	525	41	680	35	912	40	2,305	74
其他	976	25	957	54	612	28	739	29	698	26	1,374	48	949	20	2,229	84	1,043	35	890	86	...	...
其他	17,611	...	11,579	...	12,043	...	9,229	...	9,630	...	10,500	...	10,414	...	15,428	...	18,181	...	18,336	...	NA	...
其他	...	...	...	...	...	...	...	...	...	...	...	...	2,935	67	4,199	61	5,163	73	1,291	47	10,050	67
其他	...	...	...	...	...	...	...	...	...	...	...	...	...	...	887	100	1,806	87	23	4	...	...
其他	57	4	2,279	100	996	75	56	100	208	66	33	100	27	100	468	97	542	51	10	4	615	100
其他	297	66	474	74	539	83	525	90	677	85	646	87	684	82	702	76	781	80	920	81	825	76
其他	3,745	72	4,641	64	4,182	53	4,369	51	6,493	64	5,958	56	3,456	33	8,005	66	10,217	72	7,704	58	8,010	76
其他	1,059	92	112	100	225	100	157	20	194	77	263	63	3,516	98	879	99	973	100	765	67	600	44
其他	6,159	83	8,026	75	6,173	55	5,441	52	7,798	61	7,489	66	332	30	518	33	672	33	643	13	NA	...
其他	556	62	473	64	149	26	169	30	234	19	257	43	5,844	68	12,617	56	15,325	69	9,443	49	...	...
其他	25,294	...	20,831	...	19,665	...	15,977	...	19,218	...	19,383	...	20,708	...	35,397	...	43,775	...	34,232	...	45,200	...
其他	...	...	...	...	...	...	...	...	...	...	...	...	...	...	...	...	...	...	...	...	...	...

註: a, b 모두 附表 2와 同. c. 벨기에·룩셈부르크.

附表 5) 世界の 大豆油貿易, 1965 ~ 74 年

(単位: 1,000 t)

	1965年	1966年	1967年	1968年	1969年	1970年	1971年	1972年	1973年	1974年	1975年
主要輸出国 ロ부터의輸出高											
美 国	553	393	514	434	403	681	784	595	439	759	356
西 独	a	a	33	36	42	68	76	63	134	241	...
프 랑 스	a	a	a	a	a	29	42	59	63	81	...
화 란	a	a	a	21	55	86	94	113	118	197	...
덴 마 크	41	33	43	44	45	56	47	46	33	32	...
世界輸出合計	688	512	664	594	608	1,117	1,339	1,097	1,046	1,533	...
主要輸入国の 輸入高											
파 키스 탄	91	26	83	58	73	118	121	45	62	124	...
인 도	40	33	51	35	83	79	77	66	73	a	...
이 란	27	30	a	29	32	97	95	117	93	163	...
유 고	a	21	52	a	a	a	120	116	39	50	...
스 페 인	97	28	a	a	a	a	a	a	a	a	...
스 웨 덴	a	a	a	a	22	38	47	38	45	53	...
에 집 트	a	a	47	40	73	36	55	a	20	20	...
모 루 코	44	a	a	30	a	39	66	34	44	64	...
페 루	a	a	a	a	a	21	43	48	68	70	...
칠 레	a	a	a	a	a	30	32	a	40	40	...
카 나 다	a	a	a	a	a	23	23	a	20	34	...
영 국	21	a	a	a	25	61	91	63	a	40	...
프 랑 스	a	a	a	a	a	37	44	40	48	85	...
西 独	a	a	a	a	33	43	42	27	23	37	...
이탈리아	a	a	a	a	a	37	30	a	44	131	...
화 란	22	a	a	a	21	35	27	a	36	75	...
世界輸入合計	546	324	429	389	515	911	1,181	964	965	1,284	...

註: a. 2 万 t 未満.

資料: 1965~70年는 USDA FAS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FFO 17-71,
October 1971; 1970~74年는 USDA, FAS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FOP 4-76, April 1976.

附表6) 世界の大豆粕 (cake and meal) 의 生産과 貿易, 1965 ~ 75 年

(単位: 100 万 t)

	1965年	1966年	1967年	1968年	1969年	1970年	1971年	1972年	1973年	1974年	1975年
世界的大豆粕 生産高	17.1	20.0	21.8	22.8	25.5	26.3	26.9	28.9	31.7	39.4	34.4
主要輸出国の 로부터의輸出高											
美 国	1.9	2.2	2.4	2.6	2.9	3.6	4.0	3.6	4.4	4.9	3.6
브 라 질	0.1	0.1	0.1	0.2	0.2	0.5	0.9	1.4	1.5	2.0	3.1
中 共	a	a	a	a	a	a	a	a	a	a	a
世界輸出合計	2.0	2.4	2.5	2.9	3.2	4.1	4.9	5.0	5.9	6.9	6.7
主要輸入国の 輸入高											
벨 기 에	0.1	0.1	...	0.1	0.2	0.3	0.3	0.4	0.3	0.3	0.3
룩셈부르크											
덴 마 크	0.2	0.2	0.2	0.1	0.2	0.2	0.2	0.3	0.3	0.4	0.4
프 랑 스	0.4	0.6	0.6	0.7	0.8	0.8	0.9	1.0	1.1	1.5	1.4
西 独	0.4	0.7	0.7	0.6	0.9	0.9	1.2	1.3	1.1	1.6	0.7
이탈리아	0.1	0.1	0.1	0.1	0.2	0.2	0.3	0.4	0.4	0.6	0.4
화 란	0.1	0.2	0.2	0.3	0.2	0.5	0.6	0.5	0.5	0.7	0.8
영 국	0.2	0.2	0.1	0.1	0.1	0.2	0.3	0.2	0.2	0.2	0.2
스 페 인	a	0.1	a	a	a	a	a	a	0.3	0.1	0.2
西 유 럽 計	2.2	2.8	2.7	2.9	3.2	3.9	4.6	5.0	5.2	5.6	5.4
체 코	a	a	a	a	a	0.1	0.2	0.3	0.5	0.2	0.3
東 独	0.1	0.3	0.2	0.2	0.3	0.3	0.4	0.6	0.6	0.7	0.6
헝 가 리	a	a	a	0.1	0.1	0.1	0.2	0.2	0.3	0.4	0.5
화 란	a	a	a	a	a	0.1	0.1	0.2	0.5	0.4	0.5
東 유 럽 計	0.3	0.5	0.5	0.5	0.7	1.0	1.3	1.9	2.4	2.6	2.9
유 럽 計	2.5	3.3	3.2	3.4	3.9	4.9	5.9	6.9	7.6	8.2	8.3
世界輸入合計	2.8	3.6	3.5	3.7	4.3	5.3	6.2	7.3	8.2	8.8	8.4

註: a, 10 万 t 未満.

資料: USDA, FAS, O. & P., FCA, June 1, 1976.

附表7) 世界の大豆の生産と貿易, 1965 ~ 75 年

(単位: 100 万 t)

	1965年	1966年	1967年	1968年	1969年	1970年	1971年	1972年	1973年	1974年	1975年 ^a
世界の大豆生産高	32.3	34.8	36.5	39.7	40.5	41.8	43.5	47.4	57.3	51.4	62.9
主要生産国으로부터의輸出高											
美 国	6.1	6.7	7.1	8.0	8.4	11.9	11.5	11.9	13.2	13.9	12.4
브라질	b	0.1	0.3	b	0.3	0.2	0.2	1.0	1.7	2.7	3.5
中 共	0.5	0.5	0.5	0.5	0.4	0.4	0.4	0.3	0.3	0.3	0.3
世界輸出合計	6.9	7.5	8.1	8.7	9.3	12.6	12.2	13.4	15.4	17.1	16.2
主要輸入国の輸入高											
벨기에 룩셈부르크	0.1	0.1	0.2	0.2	0.2	0.3	0.3	0.3	0.4	0.7	...
덴마크	0.4	0.3	0.4	0.3	0.4	0.5	0.4	0.5	0.3	0.4	...
프랑스	0.1	0.1	0.1	b	b	0.4	0.4	0.4	0.5	0.5	...
西 独	1.2	1.6	1.6	1.4	1.3	2.0	2.0	2.2	2.8	3.7	...
이탈리아	0.4	0.5	0.5	0.6	0.6	0.8	0.8	0.8	0.8	1.2	...
화 란	0.3	0.4	0.4	0.6	0.9	1.1	1.2	1.6	1.2	1.5	...
스페인	0.3	0.6	0.8	0.9	1.0	1.2	1.3	1.4	0.8	1.5	...
영 국	0.2	0.2	0.2	0.2	0.3	0.3	0.3	0.5	0.7	0.8	...
西 유 럽 計	3.5	4.3	4.7	4.7	5.2	7.2	7.4	8.3	8.3	11.2	...
카나다	0.4	0.4	0.4	0.3	0.4	0.4	0.4	0.3	b	0.3	...
소 聯	b	b	b	b	b	b	b	0.3	0.7	...	...
台 灣	0.1	0.1	0.3	0.3	0.4	0.6	0.5	0.7	0.6	0.5	...
이스라엘	0.2	0.2	0.2	0.2	0.2	0.2	0.4	0.3	b	b	...
日 本	1.8	2.1	2.1	2.5	2.5	3.2	3.2	3.3	3.6	3.2	...
世界輸入合計	6.5	7.5	8.1	8.3	9.1	11.9	12.6	13.8	14.8	17.0	...

註: a. 推定.

b. 10 万 t 未満.

資料: 1965~70年는 USDA, FAS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FFO 17-71, October 1971; 1970~74年는 USDA, FAS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FOP 4-76, April 1976.

海外農業資料 2

食糧의 武器化는 가능한가
美國의 食糧資源과 外交政策

1980년 2월 29일 발행

發行人 金甫炫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1 서울특별시 서동대문구 회기동4-102
전화 965-7214

印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값 500원

전화 73-2104